

〈특집 : 『명공서판청명집』에 나타난 송대의 법과 사회〉

『名公書判清明集』을 통해 본 宋代 地方胥吏의 모습

朴淳坤*

목 차

- I. 머리말
- II. 地方胥吏의 종류와 관찰업무
- III. 『名公書判清明集』속에서의 胥吏의 모습
- IV. 맺음말

[국문요약]

이 논문은 13세기 남송후기에 쓰여진 『名公書判清明集』이라는 판례집 속에 나타난 송대 지방서리의 모습을 獄訟 과정과 관련한 부정행위와 조세의 부과 징수 단계에서의 부정행위 등으로 크게 두가지로 나뉘 분석하고 고찰함으로써 그 다양한 모습들을 살펴보았다.

송대에는 州·縣에 걸쳐 많은 종류의 서리가 존재하고 있었고, 이들은五代부터 행정실무 각 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여 송대에 접어들면서 직역제도의 분급과정에서 점차 세습화되어 가는 가운데 서리제도로 굳어져 가게 된 것이다. 이들은 송대 지방관료를 보좌하면서 州·縣의 행정·조세·소송업무 전반에서 일반 서민들과의 중간 매개체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이들 지방서리들은 현직 사대부 관료들이 행정실무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소송의 과정과 조세의 부과·징수과정에서 많은 부정행위 즉 뇌물수수나 횡령 등을 저지르면서 국가의 재정을 어지럽히고, 일반서민들을 수탈하는 상황을 발생시킨 것이다.

우선, 獄訟에서는 재판업무를 접수부터, 감옥에 수감, 杖刑의 집행, 석방 등 전과정에서 서리들이 뇌물을 갈취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서리들은 자신이 개별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지방관들의 묵인아래 행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또한 소송꾼(소송브로커)들과도 연계되어 일반서민들을 수탈하는 경우가 많았다.

* 대구 경상여자고등학교 교사

다음은 세금부과와 징수상의 부정행위들이 일어나는 이유로서 우선 差役法이 시행됨에 있어 공정한 분금이 이루어지지 않아 役의 부과를 회피하고 있었고, 이러한 불공정한 役의 분금 상황이 계속되자 조정에서는 모역법으로 役의 부담을 전환시켰는데 이때 등장한 것이 남호이다. 남호는 조세를 대납하는 사람으로 관청으로서는 조세의 일정한 공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남납의 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명목하에 이 제도를 유지시켜 나갔던 것이다. 이러한 조세징수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위해 또 한가지 동원된 것이 궁수·채병들을 이용한 조세추축과 체납자들의 불법체포행위였다. 원래 궁수는 치안유지를 목적으로 편성된 직역으로 일반서민의 조세추축과는 무관한 것이었으나 지방관들의 명령에 동원되어 일반 서민들로부터 원성을 받는 존재로 바뀌게 되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송대에 편찬된 판례집을 통해 地方胥吏의 실제 모습을 파악하여 그들과 일반 서민들과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나아가 남송시기 지방 서민들의 생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주제어] 송대, 서리, 『명공서판청명집』, 옥송(獄訟), 세금징수

I. 머리말

宋代는 前 시대보다 월등히 발달한 산업과 성리학 등으로 대표되는 新儒學의 출현이나 급성장된 도시 및 서민 생활 등 사회의 총체적인 성격 변화를 이루었다. 이 시기의 지배층으로 떠오른 士大夫는 송왕조의 지도적 위치를 담당하였다. 또한 송대 재정규모가 확대되자 조세 징수 및 재판 업무 등의 증가되고, 이로 인한 서민사회 발전으로 행정 업무가 점차 전문화되어 가면서 관리들을 보좌할 胥吏가 필요하게 되었다.

士大夫의 성장과 서민 사회로의 발전을 시작하던 宋代의 胥吏는 관료를 보좌하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영역을 확대하고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고, 황제권으로 상징되는 국가 권력은 地方胥吏들을 통해 직접 서민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것이었다. 官과 吏가 함께 권한을 늘여 간 것도 이러한 원리에서 나왔으며 전통적인 중국 사회에서 이와 같은 구조는 지속적으로 작용되어 갔다.

하지만 제도와 법이란 항상 사회적 현상을 뒤쫓아 가는 것이므로 법망을 피해 법과 제도의 맹점을 이용하는 약삭빠른 사람들이 늘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송대의 서리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宋代의 胥吏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일찍이 일본학계에서 시작되었다. 周藤吉之는 宋代의 職役이 五代 절도사의 직제를 계승하여 북송 말 이후에 胥吏 제도로 발전되었다고 하는데, 그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民을 강제적으로 주·현의 役에 동원하였으나 점차 그들이 胥吏가 되어 民을 지배하기에 이르자 송의 관료 기구에서는 자체적으로 그들에게 하급 사무를 맡겨서 그러한 특권을 허용하였다는 것이다.¹⁾ 宮崎市定은 胥吏가 관료의 일상 생활비까지 조달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서민들로부터 뇌물을 수취하였는데 왕안석의 개혁 이후에도 그러한 관행이 유지되었다고 하였다.²⁾ 또한 胥吏는 서민의 役에서 변형되었으므로 무봉록이 원칙이었으나 왕안석이 倉法을 시행하여 생활비용을 지급하였으므로, 뇌물을 받으면 엄벌에 처하였다는 것이다.³⁾ 또한 그는 왕안석의 개혁에서 관원이 胥吏에게 실무를 맡기지 않고 스스로 감당할 수 있도록 과거시험을 개혁하여 이러한 능력을 갖춘 인재들 등용하였는데 그 목표는 士와 吏의 合一이라는 것을 밝혔다. 梅原郁은 송대 관료 제도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胥吏에 관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그들의 행동 특성을 제시하고 조직 및 운용 상태를 재구성하였다.⁴⁾ 이러한 논문을 통하여 宋代 胥吏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까지 밝혀지게 되었다.

국내에서도 1980년대에 들어와 宋代 胥吏의 인원과 구조 및 기능에 관한 집중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申採滉은 중앙 관아의 업무가 관료에 의해 입안되고 정책이 결정되지만 그 업무 수행은 직접 胥吏와 깊은 관련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들의 정원과 규모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3성 6부 및 추밀원, 三司의 胥吏職의 구조뿐만 아니라 그들의 역할 구분 및 승진 과정을 밝혀 胥吏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관료 체제를 구성하는 각 부서마다 일정한 규모의 胥吏가 있었고 그들의 역할에 따라서 여러 계층으로 나누어졌다

-
- 1) 周藤吉之, 「宋代州縣の職役と胥吏の發展」, 『宋代經濟史研究』(東京大學出版會, 1962).
 - 2) 宮崎市定, 「胥吏の陪備を中心として—中國官吏生活の一面」, 『アジア史研究』 3(1957).
 - 3) 宮崎市定, 「王安石の吏士合一策—倉法を中心として—」, 『アジア史研究』 1(1957).
 - 4) 梅原郁, 「宋代胥吏制の概觀」, 『宋代官僚制度研究』(同朋舍, 1985).

는 사실과 함께 송대의 관료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胥吏의 조직과 활동 상황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⁵⁾ 李瑾明은 五代·宋初를 중심으로胥吏의 존재 형태 변화와 그 성격을 검토한 논문에서 북송 전기에胥吏가 官과 서민 사이에 분명한 실체로서 등장하고 사회적인 계층으로 확립되는 과정을 밝혔다. 즉, 五代之 무인정권에서 정치적으로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던胥吏는 송초에 집권 관료제의 수립과 더불어 제약을 받았지만, 인종 연간에 사회 세력으로 부상하여 관료제 내부의 제도적인 존재로서 정립되었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논의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는 것이다.⁶⁾ 申泰光은 이러한 연구 사적 과정을 기초로 하여 중앙胥吏의 활동과 士人 官僚들의 대응 과정을 중심으로 송대 정치사에 접근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사대부 사회에 대한 재조명을 시도하였다. 또한 그는 관료제의 운용과胥吏에 관하여 정리하면서 우선 宋 이전의胥吏를 중심으로 그들의 성격을 비롯하여 점차 실무적인 직업인으로서 변화되는 과정을 설명하였으며 官과의 차이를 사례를 들어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송대胥吏의 계층적 특성과 정치적 기능을 밝히며 나아가 송대 관료제의 운용 및 구조를 이해하고 사대부 사회의 본질을 규명하였다.⁷⁾

대만에서는 黃寬重이 지방 무력을 연구하다가 『名公書判清明集(이하 『清明集』)』⁸⁾에 등장하는 「弓手」에 주목하였다. 그는 『청명집』의 자료를 주로 하여

5) 신채식, 「宋代中央官衙의 吏額에 關하여」, 『東洋史學研究』 18(1983).

6) 이근명, 「五代宋初 서리존재형태의 변화와 그 성격」, 『동양사학연구』 40(1992).

7) 신태광, 「北宋말기의 胥吏의 역량강화」, 『소헌남도영박사교회기념역사학논총』(민족문화사, 1993).

_____, 「南宋전기의 胥吏」, 『동국사학』 27(1993).

_____, 「南宋후기의 胥吏」, 『지촌김갑주교수회갑기념사학논총』(1994).

8) 『清明集』의 판본은 일본의 정가당문고에 소장된 송간본이 있다. 이것은 청명집 14권 전체를 수록한 것이 아니라 戶婚門의 일부에 관한 것만 수록한 잔본과 不分卷이다. 즉 호혼문의 권6과 권7은 누락되고, 권4·권5·권8·권9를 수록하고 있다. 중국상해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명간본이 있다. 북경에서는 북경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10권본이 있는데, 이는 상해도서관 소장본과 동일한 시기에 간행된 명간본이다. 그러나 권11·권12·권13·권14가 없는 잔본이다. 이러한 간본을 이용하여 중국사회과학원역사연구소 송요금원사 연구실에서는 校勘본인 전 2冊을 中華書局에서 1987년에 출판하였다. 본고는 중화서국 校勘

공수의 직권과 형상을 설명하고 적어도 남송 말까지 공수가 사람들에게 준 인상이 상당히 부정적이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그는 공수의 이미지가 어떤 이유로 부정적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연구하였는데 그 원인은 공수가 원래는 도적을 체포하도록 편성되었지만 남송 말기에 이르러 그들은 관원의 지휘 아래 원래의 직권을 넘어, 향촌에서 세금독촉을 하는 등 서민들의 생활에 압력을 가했기 때문으로 보았다. 하지만 그는 공수가 사회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한 이유와 책임이 공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재정, 관원의 풍기 및 권문세가들이 지방에서 취하는 태도와 관련하여 더욱 보편적인 문제를 띠고 있음을 주장하였다.⁹⁾

송대 地方胥吏와 관련된 사료는 풍부하지가 않다. 정치적으로 지배층을 이

본을 활용하였다.

『清明集』은 남송시대 연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자료로써 인식되어 많은 연구자들이 이를 이용하였다. 다음은 이를 활용한 연구 성과이다. 高橋芳郎의 「名公書判清明集」, 『宋代中國の法制と社會』(汲古書院, 2002)을 참조하였다.

- ① 가족법과 여성의 재산권에 관한 연구로는 仁井田陞, 「宋代の家族法における女子の地位」, 『中國法制史研究— 奴婢農奴法・家族村落法』(東京大學出版會, 1962) 수록. 滋賀秀三, 『中國家族法の研究』(創文社, 1967). 柳田節子, 「南宋期家産分割における女承分について」, 『劉子健博士頌壽記念宋史研究論叢』(同朋舍, 1989) 수록. 柳田節子, 「宋代女子の財産權」, 『法政史學』 42(1990). 袁俐, 「宋代女性財産權論述」, 『宋史研究集刊』 2(1988). 永田三枝, 「南宋期女性の財産權について」, 『北大史學』 32(1991). 川村康, 「宋代における養子法— 判語を主たる史料として(上・下)」, 『早稻田法學』 64-1・2호(1988, 1989) 등 참조.
 - ② 刑法 연구로는 川村康, 「宋代折杖法初考」, 『早稻田法學』 65권4호(1990); 愛宕松男, 「封案~折斷の制— 宋代における執行猶豫制について」, 『東方學會創立二十五周年記念東方學論叢』(東方學會, 1972); 何忠禮, 「論南宋刑政未明之原因及其影響— 由一〈名公書判清明集〉所見—」, 『東方學報(京都)』 61(1989).
 - ③ 豪民・士人・書鋪・茶食人 등과 같은 사회층 연구로는 陳智超, 「南宋喫菜事魔新史料」, 『北京師院學報』(1985-4); 「宋代的書鋪與訟師」, 『劉子健博士頌壽記念宋史研究論叢』(同朋舍, 1989); 「南宋二十戶豪橫的分析」, 『宋史研究論文集』(浙江人民出版社, 1987); 高橋芳郎, 「宋代の士人身分について」, 『史林』 69-3(1986); 「務限の法と茶食人— 宋代裁判制度研究(一)」, 『史朋』 24(1991).
 - ④ 남송대 田宅거래와 관련한 연구로는 仁井田陞, 「唐宋時代における債權の擔保」, 『史學雜誌』 42-10; 周藤吉之, 「南宋の田骨・屋骨・園骨— 一特に改典就賣との關係について」, 『唐宋社會經濟史研究』(東京大學出版會, 1995).
- 9) 黃寬重, 「宋代基層社會的武裝警— 弓手」, 『宋代社會與法律』(宋代官箴研究會, 2001).

투었던 사대부 관료와 관련된 사료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송대 기층사회를 구성하는 일반 서민들 그리고 이들을 수탈하면서 생활했던 地方胥吏들과의 힘겨운 약속강식의 테두리를 살펴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13세기 후반 남송 후기의 판례집인 『清明集』에 나타나는 송대 地方胥吏들의 財政관련 부분 즉 세금의 부과와 징수 단계에서의 부정행위와 재판절차 과정의 獄訟과 관련한 부정행위 즉 뇌물수수 관계나 불법행위 등을 判語를 통해서 분석하고 고찰함으로써 그 다양한 모습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清明集』은 13세기 후반 남송 후기의 路의 사법감독관이었던 제점형옥을 비롯하여, 제거상평사나 知府·知州·知縣 등과 같은 판관들의 판결들을 모아 놓은 판례집이다. 판결문의 내용은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데 우선 혼인과 상속, 토지와 가옥 등 부동산 거래와 채무관계 등을 다룬 민사적 분쟁과 관료나 胥吏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등을 다룬 행정처분과 관계된 것, 조세와 역의 부담을 둘러싼 문제들, 승려와 군인의 범죄, 호민과 형세호 등과 같은 재지 실력자들이 이야기한 형사사건, 민간의 종교와 종교결사 단체에 관련된 사안 등 당시 지방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을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1차 사료가 부족한 남송시대 연구에 매우 중요하면서도 구체적 사실이 풍부한 사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는 우선 『清明集』에 나타나는 판례를 중심으로 당시 서리들의 뇌물수수 등 불법적인 부정행위의 실태를 파악하고, 사대부 관료들이 이러한 서리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정행위가 만연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II장에서는 우선 주·현에서 서리제도의 확립과정 상에 있어서 職役의 특징에 대해 서술하고, 송대 지방의 서리에는 어떠한 유형이 있었으며, 또한 그들은 무슨 일을 하였는지 알아봄으로써 송대 지방서리들이 宋왕조와 일반 서민 사이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III장에서는 실제 판결문 속에서 나타나는 송대의 지방서리들의 모습을 獄訟과 관련된 재판업무와 세금의 부과 징수 등 재정업무상에 나타나는 부정행위를 중심으로 나누어 살펴 볼 것이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서리들 외에 또 다른 胥吏 부정행위의 한 원인이라 볼 수 있는 지방에서의 소송꾼(소송브로커)들과의 유착관계도 살펴 볼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송대에 편찬된 판례집을 통해 地方胥吏의 실제 모습을 파악하여 그들과 일반 서민들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나아가 남송시기 지방 서민들의 생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II. 地方胥吏의 종류와 관할업무

1. 州·縣의 職役의 특징

송초 州·縣에서는 衙前이나 人吏, 承符·散從官·手力·院虞候·弓手 및 斗子·庫子·搯子·揀子·攔頭 등의 여러 가지 직역이 행해지고 있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唐末부터 五代의 무인 정치 하에 있었던 것으로서 그 가운데에서 아전이나 인리 중의 공목관 등은 특히 절도사 管下에서 중요한 직책이었다.¹⁰⁾ 또한 송대에서는 이들 서리를 公人과 吏人으로 나누었는데 아전이나 庫子·秤子·도자 및 원우후·공수 계통의 장직·獄子 등의 공인과 공목관 계통의 人吏인 吏人으로 구분하였다.¹¹⁾ 이렇게 북송 말에서 남송에 걸쳐서 주·현

10) 周藤吉之는 앞의 논문 「宋代州縣の職役と胥吏の發展」, 『宋代經濟史研究』(東京大學出版會, 1962)에서 서리제도의 확립과정을 설명하면서 職役으로부터 직업화로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이것은 중앙 서리문제는 배제한 채 지방서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한 송초 혹은 그 이전시기에도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던 서리의 의미를 과도하게 축소시켜 해석한 결과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職役으로부터 서리로의 발전이라는 구도에 집착하여 송초기를 職役의 시대, 즉 남송대의 서리에 해당하는 존재들이 役法대상에 속해 있던 시대라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근명은 송초의 단계 뿐만아니라 五代시기에 있어서도 직역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다수의 서리들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기본적으로 송대 서리제의 근간을 형성하는 부분은 바로 이들 서리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송대 서리제의 발전과정은 職役의 변화라는 측면보다 송초 혹은 그 이전시기에 존재하던 서리들의 비중이 확대되고 발전해가는 과정 및 이를 초래한 시대적 변화라는 시각에서 고찰하고 있다. 이근명, 앞의 논문, 57~60쪽 참조.

11) 周藤吉之, 앞의 책, 657쪽 참조.

의 관료 기구 아래에 公人·吏人의 서리 제도가 완성되어 이들 서리는 오랫동안 주·현의 하부기구를 이루고 있었다. 또한 知州·知縣은 이胥吏를 통해서 조세를 징수하고, 獄訟을 처리하였는데, 그에 따라 이들 서리들은 서민으로부터 세금 등을 가혹하게 징수·수탈하였고, 知州·知縣도 이 서리들을 통해서 사복을 채우고 있었다. 그래서 民戶도 서로 다투어 뇌물과 금전을 내면서까지 서리가 되려는 실정이었다고, 서리가 된 후에는, 이것을 보상받으려고 더 많은 수탈을 했을 뿐만 아니라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기도 하였다. 특히 조세를 징수하여 창고에 넣는 서리는 성내에 있었던 상인인 攬戶와도 관계를 맺고, 서민으로부터 가혹한 징수를 일삼았다. 그들 중에서도 특히 夏稅의 견緇(絹緇)를 선별하는 간자나 추묘를 받는 두자 등은 남호와 결탁하여, 간자는 남호의 손을 거치지 않으면 서민이 조세로 내는 견(絹:비단)을 받지도 않고, 두자도 남호의 손만 거치면 조악한 쌀이라도 받아 들였다.

이러한 남호는 간자·두자와 친인척지간인 경우가 많았다. 또한 남호는 서민들이 官에 세금으로 내는 비단을 고가로 받고는 조악한 비단을 사서 官에 넣어 이익을 챙기고 있었고, 쌀은 서민으로부터 대부분 돈으로 바꾸어 받고, 습기 차고 눅눅한 쌀을 官에 넣거나, 혹은 석두(石斗)를 속여서 소량의 쌀을 官에 넣었다. 이와 같이 남송에서는 서리가 州·縣의 말단기관으로서, 서민을 수탈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폐해를 개정하려고 하는 논의는 많이 나왔지만, 개개의 관료들도 서리들의 하나 둘은 처벌하여 교정할 수는 있어도 이 제도 전반을 개정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송대의 자산은 전지·가옥·창고·도구 등을 평가하여 몇 관 몇 백문이라고까지 표시해 이들 자산을 5등으로 나눠 ‘五等丁產簿’라는 장부에 기입하였다. 역은 이들 가운데 제1등호·제2등호·제3등호의 戶로서 20세 이상 60세까지의 丁이 두 사람 이상 있는 戶에 부과되었고,¹²⁾ 가벼운 역은 제4등호·제5등호에도 부과되고 있었다.¹³⁾

12) 고석림은 이때 서리의 職役을 담당하던 제1등·제2등·제3등호의 대부분은 형세호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고석림, 「宋代의 지배계급」, 『慶北史學』 4(1982), 233~238쪽 참조.

따라서 이 직역은 宋代 州·縣제의 운영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또 唐代의 庸은 모든 戶의 丁에 대해 부과되었는데, 송대의 職役은 戶의 자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자산이 많은 자에게 부과되고, 자산이 적은 자에게는 부과되지 않았다.¹⁴⁾ 이점에서 송대의 차역이 이전시대의 역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役들이 차역에서 모역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세습화하여 서리제도로 굳어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본고는 주·현의 胥吏 중에서 衙前을 제외한 지방서리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人吏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2. 州·縣의 胥吏

1) 州·縣의 人吏

州의 人吏는 五代의 공목관 계통의 都孔目官·孔目官·開折官·押司官 등의 직급과 前行·後行의 手分이나 貼司 등을 말한다.¹⁵⁾ 또한 周藤吉之에 의하면 송에서도 이 계통의 인리가 주·현에서 중요한 위치로 여겨지고 있었고, 특히 남송에서는 胥吏로서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분석하고 있다. 曾我部 靜雄에 의하면 人吏는 州의 여러 曹 및 여러 司의 錢穀이나 조세·재판(獄訟) 등의 문서의 기록을 담당하고 장부의 계산을 담당하였는데 주·현에서 獄訟을 담당하였던 자로는 推司, 款司 등의 아래에 대서(代書)첩사라는 직책이 마련되

13) 고석림, 「北宋代의 鄉村戶等簿와 그 성격」, 『宋代社會經濟史研究』(형설출판사, 1991), 92~97쪽 참조.

14) 김영제, 「宋代의 役法과 免役錢徵收의 諸問題」, 『唐宋財政史』(신서원, 1995), 422쪽 참조.

15) 宮崎市定은 宋代의 여러 가지 職役과 내용을 언급하면서 당시의 職役을 세가지로 크게 나누고 있는데, 첫째, 鄉役으로서 里正과 戶長, 耆長과 壯丁이 있었고, 둘째, 縣의 역은 다시 사무계통과 현장실무계통으로 나누는데, 사무계통은 押司와 錄事, 그리고 鄉書手가 있었으며, 현장계통으로는 창고의 출납인부인 斗子와 庫子, 秤子와 잡역인부인 手力·雜職, 그리고 치안유지를 위해 縣尉 밑에 弓手를 두었다. 셋째, 州의 역에는 衙前계통과 현장실무를 주로 하는 散從官·承符·人力·院虞候·斗子·搯子·揀子·庫子·秤子 등으로 구분하였다. 宮崎市定, 「宋代州縣制度の由來とその特色」, 『アジア史研究』 권4(1957), 73~75쪽 참조.

어 있었고, 이들은 소송과 관련해 뇌물을 취하기도 하였다고 분석하였다.¹⁶⁾

또 款司는 獄吏의 아래에서 국옥(鞫獄)을 담당하였는데, 이들은 貲産이 어느 정도 있어야 했고, 사무에 익숙한 자로 충당하였다. 응모하는 사람이 없으면, 직급의 연수가 찬 자를 직(職)에 나오게 하고, 자식이나 사위·친척 등이 뒤를 계승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결원이 생기면 모집하여 投名의 인리를 두었고, 충족되지 않으면 州의 속현에서 인리를 뽑아 파견토록 하여 이에 충당하였으며 2년이 되면 교체시켰다. 투명이 모자랄 때는 중등호에서도 뽑아 이 역에 충당하였고, 이들도 2년이 기한이었다. 그러나 강남이나 사천에서는 州의 인리는 거의 투명의 인리였다. 하북·하동·섬서 등의 북방의 여러 路에서는 백성들이 晝算에 어두웠기 때문에 投名이 별로 없어 향촌의 戶가 이에 충당되는 차역이 많았다. 이들 투명의 인리도 연한에 의해 직급이 옮겨졌다.

縣의 인리에는 押錄·手分·貼司가 있었다. 縣의 압록(압사·녹사) 이하의 인리도 州의 인리와 마찬가지로 서기나 계산을 담당했고, 조세의 징수나 옥송의 일도 했다. 압록은 처음에 上等戶로써 임명했으나 나중에는 투명으로 하고, 투명이 모자랄 때는 향촌에 있는 戶를 이 역에 충당시켰고, 3년이 되면 교체시켰다. 수분도 투명이었으나 화북에서는 주로 差役이었다. 남송의 여러 현에서의 인리는 수분과 첩사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어 수분과 첩사가 서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

남송은 북송에 비해 胥吏의 정원은 줄었는데, 그에 반해서 여러 주에서는 정원 외의 인리를 대부분 두고 있었다.¹⁷⁾ 남송에서 인리는 여전히 옥송과 재정을 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정원 외[額外]의 인리는 횡령이나 뇌물수수 같은 부정행위를 일삼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것이었다.

2) 州의 承符·散從官·人力과 縣의 手力

州의 승부·산종관·인력도 五代의 제도를 계승한 것으로 승부·산종관은

16) 曾我部靜雄, 『宋代の役法』, 『宋代財政史』(大安社, 1966), 236쪽 참조

17) 신태광, 『南宋후기의 胥吏』, 『芝鄕김갑주교수화갑기념사학논총』(1994), 1199쪽 참조

州의 조세를 추징하거나 관원의 심부름이나 명령에 따르는 자였고, 인력은 주의 옥송을 담당하던 判官·推官의 명령을 따르는 자였다. 이들은 향촌에 조세를 납부하는 中下의 戶 또는 성내의 戶를 지명하여 담당시키는데 2년이 되면 교체시켰다. 또 승부·산종관은 관원의 말을 키우기 위해 말의 먹이인 풀을 베거나, 관원의 離·到任時 송별이나 마중을 담당하였다.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했기 때문에 이 일이 승부·산종관에게는 가장 어려운 役이었다.

縣의 수력¹⁸⁾도 州의 승부·산종관이나 인력처럼 조세를 추징하고, 현령·주부의 심부름이나 명령에 따라 풀을 베기도 하고, 관원의 송별이나 마중을 해야 했다. 수력도 2등호나 3등호가 지명되었으며, 2년이 되면 교체시켰다. 이상과 같이 주의 승부·산종관·인력이나 현의 수력은 다른 역과는 달리 力役에 가까웠다. 이들은 대부분 차역으로 충당되어 투명이 없었으며 매우 힘든 역이었다. 이러한 점도 왕안석이 모역법(면역법)을 시행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3) 州의 院虞候와 縣의 弓手

오대에는 都虞候가 재판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송초에는 사리원이 생기고 문관인 司理參軍이 재판을 맡아보았다. 재판은 府院이나 州院에서도 이루어졌으며 이들 府·州院과 사리원에 원우후리는 役이 있었다. 원우후는 州의 판관·추관이나 사리참군의 아래에서 재판의 일을 담당하였고, 죄인을 호송하기도 했다. 원우후는 앞에 나온 승부·산종관의 법에 의해 향촌의 戶로써 충당하였으며, 3년이 되면 교체시켰다.

五代에는 鎭將이 두어져 도적을 잡고 투송을 담당했는데, 송대에서는 현에 縣尉를 두어 이 일을 담당케 했다. 그리고 현위의 아래에 궁수를 두어 도적을 잡게 했다.¹⁹⁾ 궁수는 향촌의 중등호를 임명했고, 3년이 되면 교체했다. 나중에 광남동서로나 사천에서는 궁수를 3년마다 교체했으나, 그 밖의 路에서는 교체하지 않거나 7년만에 교체하기도 했다. 이것은 궁수가 도적을 잡기 때문에 상

18) 曾我部靜雄, 앞의 책, 234~235쪽 참조.

19) 黃寬重, 앞의 논문, 238쪽 참조.

당기간 훈련을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철종 원우 원년(1086년) 차역법이 부활하면서 강남에는 아전이 투명만으로 되었기 때문에 제1등호가 이 궁수에 차출되었다. 그러나 사람을 고용해서 그 역에 대신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철종 소성 원년(1094년)에는 모역법이 다시 시행되어 궁수도 獄子에 충당되고 있었다. 남송이 되면 다른 여러 역에서는 그 인원수를 줄였지만 궁수는 꽤 많이 증강시켰는데, 이것은 남송의 치안이 혼란스러웠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궁수는 산중관이나 수력과 마찬가지로 관원의 마중이나 배움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4) 그 외 기타 胥吏職

송대에는 오대의 제도를 계승하여 양세법이 행해져 夏稅로는 비단·삼베·솜 등을 납부하게 했고 秋稅로는 쌀·조 등을 납부시켰다. 斗子是 추세인 쌀·조를 받을 때에 도구인 ‘斗’로 재는 일을 담당하였고, 揀子是 하세인 비단이나 삼베 등의 천을 받는 일을 담당하여 그것들이 규격에 맞는 것인지 어떤지를 골라서 받았다. 秤子是 조세와 소금 등의 무게를 재는 일을 담당하였고, 搯子是 조세로 바치는 돈을 고르는 작업을 하였는데, 이는 당시 함량미달의 위조화폐가 많이 유통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庫子是 창고의 되(斗)·저울·자 등을 거두어 보관하거나 창고의 돈을 지급하는 일을 담당하였고, 廳子是 監官의 使令에 따르고 있었다. 解子是 문서를 주현청으로 전달하는 일을 담당하였고, 脚子是 창고에서 곡식의 출입과 官員의 가마를 짊어지거나, 창고를 순찰하는 일 등을 담당하였다. 이들은 주·현에 모두 배치되어 있었고, 제3등호·제4등호에서 뽑아 충당하였다.

이상 주·현에서의 여러 인리들을 살펴보았다. 이들을 주·현에 따른 관할 업무와 관련하여 표로써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州·縣 人吏의 관할 업무

관 할 업 무	州	縣
獄訟 담당	(代書)貼司	
鞫獄 담당	款司	
縣에서 조세 징수, 獄訟		押錄
諸司의 錢穀 등 조세 장부 계산담당	手分	手分
縣尉 下에서 치안 유지 담당		弓手
조세 추정, 官員의 심부름 수행	承符, 散從官	手力
獄訟 담당, 判官·推官의 명령 수행	人力	手力
官用馬 먹이 예초 작업	承符, 散從官	手力
관원 離到任時 배웅·마중 및 경비부담	承符, 散從官	手力, 弓手
州의 判官 下에서 재판 담당, 죄수 호송	院處候	
秋稅(쌀, 조)를 도로 재는 일	斗子	斗子
夏稅(비단, 면)의 규격 선별	揀子	揀子
조세와 소금의 무게 측정	秤子	秤子
조세로 바치는 돈을 선별	揔子	揔子
창고의 斗·저울·자 보관 및 창고의 돈 지급	庫子	庫子
監官의 使令	廳子	廳子
文書 州·縣廳으로 전달(문서수발)	解子	解子
창고 곡식 출입과 관원의 가마 운송 및 창고 순찰	脚子(脚力)	脚子(脚力)
稅務·稅場의 監官 下에서 商稅 징수, 화물 수색	攔頭	攔頭

그 외에 攔頭는 州·縣의 河江의 연안이나 內地에 있는 鎭市에 설치된 稅務나 稅場에 두어져 監官 아래에서 상세를 징수하는 자였다.²⁰⁾ 이들도 오대부터 두어졌는데 송에서는 제5등호를 이에 충당하였다. 또한 남송에서는 稅場에 많은 난두가 있어서 상인의 화물을 대대적으로 수색하고 뇌물을 받거나 중세를 취하였다. 이들 가운데 무뢰배들이 많이 있어서 상인뿐만 아니라 서민들도 수탈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송대의 상업을 저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송초의 차역법에서는 많은 역이 호의 등급에 따라 충당되었고, 투명은 아전의 일부와 인리 등에 행해질 뿐이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서리로

20) 周藤吉之, 앞의 책, 803쪽 참조.

서 뇌물을 갈취한 자도 많이 있었다.

Ⅲ. 『名公書判清明集』 속에서의 胥吏의 모습

『清明集』의 구성을 보면 총 14권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그 중 본고에서 검토한 대상은 권1·권2의 官吏門, 권3의 賦役門, 권11의 人品門, 그리고 권12·권13·권14의 懲惡門이다. 그 중에서 본고의 검토대상인 지방서리와 관련된 것이 관리문에서 12건, 부역문에서 16건, 인품문에서 31건, 징악문에서 33건으로 총 92건이고, 내용상으로 분류해 보면, 세금 부과 및 징수 등의 세정업무관계가 33건, 옥송관계 등 재판업무관계가 38건, 지방의 유력자들인 豪民들과 유착관계에서 발생한 부정행위가 11건, 소송을 일으켜 분쟁이익을 착취하던 소송꾼(소송브로커)들과 서리와 유착관계 사안들이 10건 등으로 대별할 수 있겠다. 특히 권11의 인품문에는 따로 「公吏」편을 두어 지방서리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판결만을 모아두어 당시 서리들의 부정행위가 심각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당시의 일반서민들과 접촉하는 서리들의 모습이 모두 다 부정적인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본고의 연구에 중심적 자료인 『清明集』은 법률적 판례집인 까닭에 서리들의 횡령이나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로 인해 그들을 고소·고발·처벌하기까지의 재판과정을 서술한 특성상 부정적인 면만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선 밝혀 두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清明集』 속에서의 서리의 모습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獄訟과 관련된 서리들의 재판 과정상의 뇌물수수 등의 부정행위 모습과 둘째, 세금의 부과 징수에 따른 뇌물수수·횡령의 실태 및 조세의 강제징수 등 세정업무 상의 모습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우선, 그 당시 서리들의 부정행위를 재판하던 판관들의 서리에 대한 생각을 다음 판어에서 살펴보면,

백성에게 해를 가하는 것 중에 서리 보다 더 추악한 것은 없다. 탐욕한 官은 서리가 행

하는 부정에 대해 모르는 척 눈을 감아주고, 심지어 서리와 공모하는 자도 있다. 범용한 관은 서리를 단속할 수 없어 모든 것을 서리의 손에 맡겨 버린다. 그래서 서리는 마음먹은 대로 부정을 행하고 백성은 수족을 들 곳도 없을 정도이다. …(중략)… 信州 上饒縣의 정치는 매우 해이해져 있고, 심지어 서리가 말하는 것만 효과가 있을 정도이다. 일부분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재판에서도 소송이 빈번하고, 백성을 소환해서 어지럽히는 정도가 무척 심하다. 관이 범용하면 서리가 탐욕한 짓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까닭에 官의 용렬함은 탐욕으로 연결된다. 이들 官은 모두 淘汰시켜야 한다.²¹⁾

이는 절서전운사 吳雨巖의 판결문에 나오는 서리에 대한 인식으로서 路를 순시하는 과정에서 信州의 지방관리들의 무능과 업무의 태만함을 꾸짖으며 서리의 부정은 모두 관리들이 탐욕한 마음을 가지고 서리의 부정을 눈감아 주거나, 행정이나 獄訟의 실무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토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남송시대 지방관리들이 옥송의 실무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북송말 남송초 전란의 피해로 인해 斷例[판례]가 대부분 흩어져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건염연간(1127~1130) 이전의 처리안건의 검색은 대체로 서리들의 기억에 의지해 재편성하였고, 이에 따라 여러 가지 폐해가 생겨났던 것이다.²²⁾ 그리고, 남송시기 『清明集』과 같이 판례를 모아서 책으로 편찬하여 각 州·縣의 관관들에게 보급시킨 것으로 보아 宋代의 재판에서는 법률조문의 단순한 적용보다는 이전의 관련사건을 참고하여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사건마다 그 사안과 특성이 다를 수 있겠으나 재판의 공정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21) 『清明集』 卷2 官吏門 「汰去貪庸之官」 “害民莫如吏，官之貪者不敢問吏，且相與爲市，官之庸者不能制吏，皆受成其手。於是吏姦縱橫，百姓無所措手足。…(中略)… 而上饒庸冗特甚，惟吏言是用，其擾民之事不止一端，至於獄事泛濫迫擾爲尤甚。官庸則吏貪得行，則庸亦所以爲貪也。此等皆當澄汰。”

22) 川村康，「宋代斷例考」，『東洋文化研究所紀要』 제126책(1995).

1. 獄訟 과정에서의 모습

재판과정상에서의 서리의 부정행위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먼저 서리 독자적으로 제도의 헛점이나 법망을 피해 중간에서 착복하는 경우와 지방관의 묵인 하에 아예 드러내 놓고 뇌물수수나 각종 수수료 명목의 돈을 서민들로부터 수탈하고 있는 경우일 것이다.²³⁾ 그리고, 서리들의 부정행위의 한 원인이라 볼 수 있는 소송꾼(혹은 소송브로커)과의 유착관계가 한 경우일 것이다.

송대에는 獄空이라 하여 관할하는 州·縣의 감옥이 비게 되면 잔치를 벌이는 제도가 있었다.²⁴⁾ 이는 지방관들이 근면하여 재판업무를 쉬지 않고 돌보는 데서 기인한다고 보고, 조정에서는 상금까지 내리는 제도였다.²⁵⁾ 吳雨巖이 쓴 判語에서도 볼 수 있듯이

本路(강남동로)내에서 饒州·信州보다 獄事가 많은 곳은 없다. 평소 옥에 구속되어 있는 자는 특하면 100명, 10명 단위로 셀 수 있을 만큼, 지금도 獄空이 된 예가 없다. 이것을 그 곳에 사는 주민들의 질이 나쁘기 때문이라고 만든 할 수 없다. 그것은 모두 판사가 옥사를 뜻에 두지 않기 때문이다. 重罪의 안건이 나올 때마다 일절 서리에게 맡겨, 그 패거리는 결탁해서 서로 연락하고 시간을 끈다. 그래서 옥은 구류된 사람들로 넘친다. 기후가 나쁠 때나 환절기 등에는, 많은 사람들이 병에 감염되어, 죄가 없는 사람이 죽게 된다. 본관은 이것을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한다.²⁶⁾

23) 劉馨琄은 특히 북송말기 이후에 조정의 권력층에서 뇌물수수가 이루어질 때, 하위 관원들이나 서민들이 청구행위를 하면 심지어 가격협상을 하고, 조정의 수수료까지 매기기도 하였다고 한다. 劉馨琄, 『宋代的請託風氣—以「請求」罪爲中心之探討』, 『宋代社會與法律』(宋代官箴研究會編, 2001), 182~183쪽 참조.

24) 宮崎市定, 『宋元時代の法制と裁判機構』, 『アジア史研究』 권4(1957), 293쪽 참조.

25) 宋初 조정은 獄이 비어 있는 지방에 포상을 하였다. 州의 獄이 3일이상 비어 있다는 보고가 있으면 道場을 건설하고 소요되는 공물을 위해 官錢 3貫을 지급하였다. 이 때문에 일부 주·현에서는 오히려 옥에 구금된 죄수의 수를 줄이거나 은닉하는 일이 발생하여 부패를 낳기도 하였다. 박영철, 『譯註 宋史 刑法志』, 『중국사연구』 19집(2002), 365쪽 참조.

26) 『清明集』 卷11 人品門, 『治推吏不照例』 祓, “本路獄事之多, 莫如饒, 信, 居常繫獄者動輒百十人, 未見有獄空之時. 此不可專歸罪於民俗之頑獷, 皆緣官司不以獄事爲意, 每遇重辟名件, 一切受成吏手, 一味根連株連, 以致歲月庵延, 獄戶充斥. 氣候不齊之時, 春秋之交,

라고 하였다. 하지만 官과 서민이 모두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는 중에도 서리들은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왜냐하면 서리들은 항상 옥에 사람들이 가득하면 그 자체가 수탈의 대상이었고, 큰 범죄가 생기면 지방관은 재판업무를 서리에게 일임해 버렸기 때문에 서리들이 마음 놓고 중간에서 농간을 부림으로써 옥송을 오래 끌어 서민들을 편취해 뇌물을 거둬들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推吏등은 知州·知縣 등이 재판 업무를 부당하게 疏決²⁷⁾처리한다고 불평을 늘어놓기도 했다.

서리의 재판과정에서 부정행위의 다른 유형으로는 다음 판어를 보면,

최근 諸州의 소송문서를 조사해 보면, 증인을 소환해서 뇌물을 요구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자 죽였다는 것과, 옥으로 호송해서 뇌물을 서로 요구하다 사람을 죽였다는 것과, 杖을 집행함에 있어 뇌물을 요구하다 사람을 죽였다는 것과, 죄 없는 사람을 함부로 체포해서 매달고 때려 죽게 한 일이 있다.²⁸⁾

보통 소환되어 官에 출두한 사람은 대개 단순한 증인이나 소송관계자에 불과하다. 고소당한 자라 할지라도 그 취조에는 그 나름대로의 절차와 도리가 있게 마련이며 소환된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두 죄를 범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推吏는 출두한 사람을 함부로 다루면서 매달아 놓기도 하는 등 다양한 고문을 가했다. 게다가 고문마저도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여러 가지 금품까지 요구했던 것이다. 이것은 官으로의 출두, 獄으로의 호송, 수감, 석방, 杖 집행시 쏘 과정에 걸쳐 뇌물의 요구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판결문 중에서도 지방관을 무시하고 폭력까지 사용하면서 권력을 私적으로 사용하여 官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경우도 있었지만, 또한 知縣 등

多是疾疫相染，無辜瘐死，當職心甚痛之。”

27) 원래 흑한이나 흑서 등 기후 불순시에 미결구류처분하기 곤란한 시기에 심리가 지체되는 사건을 공판절차를 빨리 하는 것으로 점차 면제의 구제를 비롯한 감형조치가 되어 미결을 대상으로 恩赦의 기능까지 하였다.

28) 『清明集』卷1 官吏門, 「禁約吏卒毒虐平人」, “近閱諸郡獄案, 有因迫證取乞不滿而殺人者, 有因押下爭討支俵而殺人者, 有討論杖兜駝錢而殺人者, 又有因追捕妄捉平人吊打致死者.”

의 지방관을 끼고서 관청을 좌지우지하는 경우도 많았다.

판어를 살펴보면,

知縣은 부임한 이후 거의 善政은 하지 않고, 사형에 해당하는 사건은 전혀 처리하지 않고 늦춘 채, 그저 서리가 뇌물을 받는 것을 허락할 뿐, 탐욕하다는 악평이 세상에 자자하다. 일반 서민인 章夔는 전에 본사로 신고하러 왔는데, 知縣은 徐發에게 寨兵을 이끌고 향촌으로 내려가게 해, 도적을 붙잡듯 (장기를) 체포한 것이다. 채병을 향촌에 내려보낸 것은 법률로도 허락되지 않는다. 서발은 현의 한 병졸에 불과하면서, 이와 같이 건방진 태도를 보인다. 押錄 許慶은, 이미 700관을 협박해서 뺏었는데, 知縣은 만족하지 않았다. …(중략)… 본현에서는 신고를 수리할 때, 반드시 官紙를 사용해야 하고, 또 반드시 2장을 강매하고 있다. 또 傳押을 사용해야 하고, 거기에도 가격이 정해져 있다.²⁹⁾

위의 판어에서 보이듯이 知縣이 서리들을 후하게 대우하는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그것은 서리들이 수탈하여 벌어들인 뇌물의 일부를 나눠 갖기 때문일 것이다. 위 판어에서도 부임한 지현이 옥송사건을 모두 서리에게 일임하고, 불법적으로 채병을 이용해 소송당사자들을 잡아들이고, 소송장 접수시에도 반드시 官에서 사용하는 용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요즘의 법원에서 소송장을 접수할 때에 개별적으로 접수하는 것보다 법무사를 통해서 할 때 법원에서도 더 빨리 잘 처리 해주는 것과 비슷한 경우일 것이다.

다음 판어를 보면,

桂州 臨桂縣의 황점(黃漸)은 儒者라고 자칭하며 小學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업으로 삼고 있던 자였는데, 가난하여 영복현에 임시로 살며, 陶씨 家에서 처와 함께 신세지고 있었다. 그런데 승려인 묘성(妙成)과 황씨의 집주인인 도잠(陶岑)과는 서로 의복 사건으로

29) 『清明集』 卷2 官吏門「繆令」, “知縣到任以來, 略無善政, 大辟刑名公事, 件件不理, 但有縱吏受賄, 貪聲載路. 百姓章夔昨經本司陳訴, 本縣差徐發統領寨兵下鄉, 如捕盜賊. 寨兵下鄉, 法所不許, 徐發特本縣一卒, 且橫如此. 押錄許慶既奪取七百貫矣, 而知縣不滿所欲, …(中略)… 本縣受詞, 必須官紙, 必賣兩券, 受詞必須傳押, 亦須定價, (後略)….”

싸우는 중이었는데, 결국 황점의 처까지 여기에 말려들어 서로 상대방과 간통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尉司가 이 사건을 고발하고, 현에서는 이것을 접수해 황점·도잡과 승려 묘성을 각각 장형60대, 황점의 처인 아주(阿朱)는 처벌을 면하는 대신 軍寨로 호송해서, 그곳의 군인 중 희망자의 처가 되어야 했던 것이다. …(중략)…송장을 접수하고 담당자도 아니면서 판결문서를 작성한 것은 모두 위법행위이다. 承吏인 장음(張蔭)과 劉松을 취조하도록 하라. 반드시 부정한 것을 취득했을 것이다. 원래대로라면 이것은 路에 알려져야 하는 것인데, 이번만은 면제해주고, 각자 장형100대를 부과한다.³⁰⁾

위의 판결은 몇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서리들의 농간이 들어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법에서는 “간통은 徒刑 2년, 승려나 道士의 경우 죄를 한 등급 더 무겁게 한다”³¹⁾고 되어 있고, 또 “간통사건에 대해서는 남편의 제소를 필요로 한다”³²⁾고 되어 있으며, 또한 “처가 간통사건을 범한 경우 이혼할지 안 할지는 남편이 결정한다”³³⁾라고 되어 있다. 여기에 대해 황점은 간통사건에 대해 제소하지도 않았고, 단지 도잡과 승려와의 소송분쟁에 관련되어 阿朱가 나오게 된 것에 불과했으며, 실제로 간통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은 알 수가 없다. “간통사건 제소는 반드시 남편이 한다”라는 법 조항에는 이런 의미에서 깊은 배려가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황점은 이혼을 원한 것이 아니었는데, 縣에서는 그의 처를 軍寨로 보내 희망자에게 준 것이다. 몸가짐이 나쁜 부인을 군인 희망자에게 처로 준다는 조치는, 우선 잡호로 전락된 경우나, 원래 남편이 없는 경우, 그리고 남편이 원래

30) 『清明集』 卷12 懲惡門, 「因姦射射」, “臨桂黃漸, 竊衣縫掖, 以小數爲生, 僑寓永福, 依于陶氏之家, 携妻就食, 貧不獲已, 此已可念. 寺僧妙成與主人陶岑互相衣物, 遂及其妻, 因謂有姦. 尉司解上, 縣以黃漸, 陶岑與寺妙成各杖六十, 其妻阿朱免斷, 押下軍寨射射. …(中略)… 非長官而受白狀, 非所司而取草款, 俱爲違法, 行下取問承吏張蔭, 劉松, 必有取受, 本合送勸, 今且免行, 各從杖一百.”

31) 임대희·김택민 主編, 『譯註 唐律疏議』 各則(下)(한국법제연구원, 1998), 3227쪽, 「雜律」 410條, 「諸色犯姦」, “諸姦, 徒一年半, 有夫者徒二年”이라 되어있고, 여기에는 “有夫”에 해당하므로 “徒二年”이 적용된다.

32) 『慶元條法事類』 卷8 雜文, 「諸色犯姦, 捕亡勸」 “又法, 諸犯姦, 許從夫捕.”

33) 『慶元條法事類』 戶令 “又法, 諸妻犯姦, 願與不願, 聽離從夫意.”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에, 갈 곳도 없고 조정으로서도 처리가 곤란한 자에 한해 비로소 취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 경우와 같이 남편이 공소하지 않았는데도 간통죄로 판결부터 내리고, 남편이 이혼을 희망한 것도 아닌데 강제로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는 것은 법이 의도하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다. 만일 사실 관계가 애매한 채, 간통사건을 남편이 제소하지 않았는데도 처단하고, 남편이 희망하지 않았는데도 처와 이혼시킨다면, 남의 비밀을 함부로 폭로해서 고소하게 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게 되어, 무고죄로 고통받는 사람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현재 부인의 대부분은 軍寨로 보내져야 될 것이다.

또 승려가 간통한 경우, 일반인보다 죄를 무겁게 해야 되는데도, 여기에서는 그저 杖刑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또 부인의 和姦은 徒刑 2년인데도 여기에서는 처벌을 면해주고 있다. 이와 같이 부인의 徒刑 처벌은 면제해 주고, 승려의 죄는 가볍게 해준 것은 제대로 된 판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왜 황점은 도잡과 묘성과 같은 죄로 처벌받아야만 했을까? 왜 이주는 군인의 婬로 보내져야만 했던 것일까?

여기에서 서리들의 뇌물수수가 의심이 된다. 소송장 접수에서부터 承吏가 관여하여 판결문 작성까지 관여함으로써 뇌물을 받았을 혐의가 짙은 것이다.

이상과 같이 지방관이 재판업무에 관여하지 않거나 묵인하는 틈을 이용해서 마음대로 자신이 판관이나 된 듯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縣 단계에서의 이야기이다. 아예 상급 관청의 판관조차 건드릴 수 없는 眼下無人격인 서리들도 있었다. 다음 채구현이 쓴 판어를 살펴보면

본사의 副吏 왕진은, 말을 잘하고 교활하게 나쁜 일을 하고 마음이 삐뚤어 욕심이 많은 것이 호랑이나 이리와 같다. 전임 제점형옥은 이 자에게 농락 당했기 때문에 이 자의 위서는 온세상(九州)에 미치고,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의 도리를 짓밟는 듯한 행위로 휘저어 왔다. 뽀뽀스럽게 제점형옥과 손을 잡기도 하고 귓속말을 하기도 해서 사람들은 모두 「小提刑」이라 부를 정도였다. 본관은 이전 본 路에 근무해서 그 악행은 잘 알고 있지만, 그를 斬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³⁴⁾

라고 하는 것처럼, 채구헌의 동료이자 路의 최고 사법감독기관에 해당하는 제점형옥조차도, 서리인 왕진에게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서리가 존재하고 있는 곳은 어디라도 실질적인 권력이 그들의 손에 의해 장악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다. 어느 정도의 의욕이 있는 관료가 아닌 이상, 그들의 권력으로부터 빠져 나올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안하무인의 서리들도 일단 처벌을 받아 파면되면 다시 재임용 될 수는 없었다.³⁵⁾ 송왕조는 특히 뇌물죄로 徒刑 이상의 刑을 받아 파면된 서리는 더욱 임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중법을 세워 이를 경계하는 조서를 자주 반포하였다.³⁶⁾

黥配가 된 서리를 추방해서 양민을 안심시키는 것은, 지방장관의 仁政으로 봐야 하고, 본시는 이런 지방관의 모든 이름을 명부에 기록하고 있다. 예의 죄를 범해서 파면된 서리의 경우는, 그 범한 죄가 아주 가벼운 것이더라도 추방할 수 있어, 지방장관이 악을 미워하는 심성을 상당함을 잘 나타내고 있다.³⁷⁾

하지만 몇몇 서리들은 지방관의 목인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다시 임용된 것처럼 행세를 하고 다니며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경우가 나타나는데 다음 판어를 보면,

李俊明은 원래 州의 吏였는데, 이미 파면되어 徒刑을 받았으므로 吏役에 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대도 倉司에서 제멋대로 다시 吏職으로 돌아온 것이다. 이 사실만으로

34) 『清明集』 卷11 人品門, 「籍配」 “本司副吏王晉, 以斂給濟姦, 以狡險濟惡, 貪狠如虎狼, 前政提刑受其籠絡, 威行九州, 凌犯網常, 至敢與提刑握手耳語, 人皆呼爲小提刑. 當職曩仕本路, 備稔其惡, 恨不斬之.”

35) 이에 반하여 송대에는 같은 贓罪 즉 뇌물수수라도 지방관 이상의 관료들의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발령을 내는 수준인 對移정도로 다루었다.

36) 郭東旭, 『宋代法制研究』(河北大學出版社, 2000), 127쪽 참조.

37) 『清明集』 卷11 人品門, 「逐出過犯人吏檢舉陞陟」 “逐黥配之吏, 以安良民, 此可見令尹之仁政, 本司併行籍記. 所有打罪勒罷之人, 所犯雖少輕, 然能併逐之, 尤見嫉惡之盛心, (後略)…”

도 불법인데 借補에 의해 承信郎이 되었다고 사기를 쳐서 暴家岐에서 監稅의 役職을 총괄하게 되었다.³⁸⁾

또 다른 판어에도

손희는 몇 번이나 判官형을 받았는데도, 거짓으로 서리로 임명되고, 현의 우두머리라도 된 듯 縣政을 자신의 일처럼 휘젓고, 스스로를 「立地知縣」이라 칭한다. 동생 손만팔은 길거리를 휘젓고 다녀 사람들은 「팔왕」이라 부르고 있다. 그 밖의 자들도 미루어 알 수 있다.³⁹⁾

李俊明이나 孫迴는 정식의 知縣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현을 대신할 만한 지위를 차지하여 실질적인 권력자가 되었는데, 이전에 서리로 있을 당시부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면서 당시의 지현의 목인아래 많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파면된 뒤 判배형⁴⁰⁾을 받고 유배를 갔다가 돌아와 권력을 행사해도 지현은 그의 행위를 알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서 살펴 볼 판어는 서리들의 부정행위의 또 한가지 원인이라고 볼 수

38) 『清明集』 卷2 官吏門, 「郡吏借補權監稅受贓」, “李俊明原係郡吏, 已經徒勒, 豈應入役, 輒就倉臺, 妄行叙復. 己爲不法, 又敢恃借補爲承信, 攝監稅於暴家岐, (後略)….”

39) 『清明集』 卷11 人品門, 「違法害民」, “孫迴累經編管, 僞置置充吏, 首占縣權, 自號立地知縣. 弟孫萬八橫市井, 人呼八王, 其他可知.”

40) 編配의 의미와 위치에 대해서는 滋賀秀三과 辻正博 두 사람의 견해가 있는데, 滋賀秀三은 「刑罰の歴史と東洋に於て」, 『刑罰の理論と現實』(岩波書店, 1972)에서 死 1등을 감하는 수단으로 5刑 후 判배가 가능했다. 判배에는 지방의 잡군에 편입되는 配軍(혹은 配隸·配流라고도 한다. 단순히 配라고 하면 형벌을 의미한다.), 遠隔地에 입송해서 그 지역에서 자주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그 지역의 지방관청의 감독아래에 두는 編管, 判官보다 감찰 정도가 느슨한 羈管이 있었다. 모두 무기형이고, 가족이 따라 가는 것이 허락되었다. 流刑은 折杖法에서는 “脊杖에 配役을 더한 것”으로 환산하여 시행하였는데, 居作(노역형)은 면제되어 判배에 처해졌고, 절장법에 의한 환산은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여기에 반해, 辻正博은 「宋代の流刑と配役」, 『史林』 78-5(1995)에서, 流刑을 환산한 “척장에 배역을 더한” 것은 집행되었고, 특별한 경우에만 判배가 부과되었다고 설명하다.

있는 소송꾼(소송브로커)과의 유착관계이다.

張夢高는 서리 金眉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장씨라 자칭하고, 서리의 악패를 몸에 익혀 소송꾼과 사기를 생업으로 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여러 현으로부터의 소송인을 권유해 집에 묵게 하며 소송에 관한 것에 대해 지혜를 빌려주거나 했는데, 그 사이에 公使에게는 뇌물을 주고, 官員에게는 청탁을 하고, 이들을 娼家로 불러내어 이야기를 끄집어내기도 하고 찾집으로 불러내어 뇌물을 주기도 하는 등,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할 수 있는 한의 수단을 써서, “백주 대낮에 당당히 돈을 낚아채는 듯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게 되었고, 결국 재산과 세력을 쌓아 주의 관청에 출입하면서 서리를 턱으로 부리고, 조금이라도 뜻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생기면 무뢰배를 이용해 중앙에까지 고소하게 하는 등, 대단한 세력을 가지고 있어서 감히 책망하려는 자도 없었다. 기회를 봐서 이익을 탐하고 남의 재산을 가로채고 죄도 없는데 가옥 부지를 빼앗긴 자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⁴¹⁾

이상과 같이 소송꾼들의 범죄수법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들은 지방의 일반서민들을 꾀여 이익이 될 만한 사건을 일으키고, 서리에게 뇌물을 주어 고소당한 사람들을 무조건 잡아들이게 하고서 합의를 보는 대가로 소송을 무마시키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 소송무마를 이유로 돈을 갈취하였던 것이다. 다시 말해 이들은 소송꺼리를 만들어 서리들에게 뇌물을 갈취할 수 있는 사냥감을 마련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위 판결문처럼 이들은 州의 관청에까지 가서 서리들을 매수하여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안하무인격인 행위를 일삼는 경우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서리들이 부정을 저지를 가능성은 무수하게 많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악덕서리를 근절하는 것이 어찌서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일까? 그것은 당시의 知州·知縣과 같은 지방관과 서리와의 관계는 필수불가결한 관계이었

41) 『清明集』 卷13 懲惡門, 「撰造公事」 “張夢高, 乃吏人金眉之子, 冒姓張氏, 承吏姦之故習, 專以譁訐欺詐爲生. 始則招誘諸縣投詞人戶, 停泊在家, 撰造公事. 中則行賄公吏, 請囑官員, 或打話倡樓, 或過度茶肆, 一罇可人, 百計經營, 白晝攫金, 畧無忌憚. 及其後也, 有重財, 有厚力, 出入州郡, 頗指胥徒, 少不如意, 卽唆使無賴, 上經臺部, 威成勢立, 莫敢誰何. 乘時邀求, 吞併產業, 無辜破家, 不可勝數.”

기 때문이다. 관료는 실무적인 면에서 서리에게 의지하고, 서리는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기 위해 관료를 이용한다. 따라서 지방정치에서 서리가 배제되는 일은 없었고, 無給의 서리들이 많은 적든 부정행위를 행하게 되는 구조와 환경이 마련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이 어떤 선을 넘으면 물론 크게 눈에 띄게 되어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서리의 부정을 한번에 근절시킬 수는 없었을 것이다.

2. 조세부과 및 징수 과정에서의 모습

稅政 부분에서 먼저 고려해 볼 부분은 差役に 관한 것으로 宋초기부터 시행되던 차역법은 아전이나 서리직과 같은 役을 서민들이 맡아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免役田이 늘어남으로써 공정성이 결여되자 이로 인해 남게 되는 戶들의 부담이 가중되기 시작하였다. 이 때문에 관에서는 되도록 철저히 검증을 한 후 대장에 확실한 기록이 남겨진 것을 확인하고 면역을 허락해 주게 된다. 송대의 면역이 되는 대상에는 우선 官戶, 성내에 있는 坊郭戶, 사원이나 도관에 속한 寺觀戶, 丁이 한사람 뿐인 單丁戶, 丁이 아직 미성년인 未成戶, 그리고 女戶가 있었는데,⁴²⁾ 그 중에서 면역이 되는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던 것이 바로 官戶이다.⁴³⁾ 이는 자신의 조상이 관직을 역임한 대가로 후손들이 누리는 혜택이지만 다음에 나올 墾戶와 같이 관내의 호가 전부 관호로 되어 있어 차역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나오게 되었다. 어째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墾戶를 살펴보면,

본 현의 穎秀리는 향에서는 합계 7개의 都가 있고, 성문 밖에서 불과 15리정도 떨어져 있어 그 토지는 성내인의 것이 아닌 곳이 없고, 省簿에 세워진 戶는 모두 官戶로 되어 있고 編戶라 되어 있는 곳은 하나도 없다. 지금까지 7都안에서 검토했는데, 전임관(지현)은 差役을 하나도 충당하지 못했고, 催科 때 향사에게 강제로 대신 인수하게 하고, 專人을

42) 周藤吉之·中嶋敏 共著, 『中國의 歷史』 5 五代·宋講談社, 1974), 199쪽 참조.

43) 제임스 류 저, 이범학 옮김, 『왕안석과 개혁정책』(지식산업사, 1991), 131쪽 참조.

파견해서 지급하기도 했다. 향사에게 시키면 官物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이고, 專人을 사용하면 현지에서 소동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나 성내 거주자들은 모두 廳舍 옆에 있고, 한 번 차역이 그들에게 미치면, 일제히 일어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평을 한다. 현의 서리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심하게는 가난한 下戶로 세전이 100이 될까 말까 하는 자를 충당시키는 바람에 役고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집안의 喪事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鄉에 폐해가 계속된 지 거의 10~20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본래의 상태로 회복시킨 자가 없다. 수 년 전, 이 자리에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관적을 끄집어내서 다시 확인해 봤는데, 그 중에는 眞僞가 반반 정도 있고 게다가 실제로 근거가 있어 免役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증문을 가지고 오게 해서 법률에 비취 보니, 이 七都의 차역은 3년 간 빠진 적이 없었다.⁴⁴⁾

관품의 限田은 원래의 限田의 법령에 비취 반감하거나, 차역을 면제해야 한다. 官吏가 사망한 후에는, 조상의 蔭德을 받은 자는 관리가 생전에 임관했던 때의 품격에 의해 반감시켜 받을 두는 것이 허용된다. 또 분가의 기록 및 토지 대장 안에서 아버지와 조부의 官品 및 戶가 들 수 있는 限田의 수량. 즉 지금까지 분할한 호는 몇 호인지, 각각의 호가 각 한전에 들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인지 확실히 기록해서 두어야 한다.⁴⁵⁾ 왜냐하면 나중에 후손들이 戶를 분할했을 때, 이것과 똑같이 명기하고, 또 밭의 畝步數와 주·현·향촌 내에서의 소재지를 기록해 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차역의 차례가 돌아 왔을 때는 이것을 보고 모두 조회하여 免役하기로 하는데, 만일 분가의 기록 혹은 토지대장 안에 명기해 두지 않으면 모두 免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현에 있는 장부에 가짜가 많고 증거문서가 침부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게 의문이 가

44) 『清明集』 卷3 賦役門, 「限田論官品」 “照對本縣穎秀一鄉, 共計七都, 相去城圍纔十五里, 無非在城寄產, 省簿立戶, 並有官稱, 無一編民. 自前七都之內考之, 前官悉無可差之役, 所有催科, 或勒鄉司代承, 或差專人追上. 付之鄉司, 則官物侵欺, 責專人, 則鄉鄰搖動. 且所居人戶咸在臺府之側, 役一及之, 羣然而訟, 朝發暮至, 縣吏束手, 莫敢誰何. 甚而貧民下戶稅總滿百, 便使承認, 役未終更, 家卒用喪, 尤爲可念. 此一鄉之宿弊, 凡一·二十年, 未有能正其名者. 往歲到官之初, 嘗取版籍, 逐一考覈, 其間眞僞相半, 而實有憑可以免役者無幾. 索上千照, 從條參對, 而七都之役, 三歲無缺.”

45) 曾我部靜雄, 앞의 책, 452~456쪽 참조.

는 점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서리들의 부정이나 근무태만이 그 원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원래 면역전으로 관에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밭의 畝數와 소재지 및 누구의 명의인지 砧基簿에 기록하여 3부를 작성, 현·주·전운사에 보관하도록 되어있다.⁴⁶⁾ 그런데 分關·簿書 등 증거기록 자체가 없다는 것은 현재 자손이 몇 명인지, 얼마나 한전으로 해야할 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서리들이 뇌물을 받거나, 친분이 있는 관계 등으로 면제를 해준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관내가 전부 官戶로 지정되어 있는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다음 판어에 보면,

樂侍郎이라는 戶는, 이름이 叱라는 자가 남당에서 태어났고, 송 초에 관리로 임명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300년이 지났는데 아직 侍郎에 의해 戶를 세우고, 시랑에 의해 免役 되었다.⁴⁷⁾

라고 하여 심지어 조상이 관직을 지낸 지 300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 관호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서리들은 이러한 것을 가려내 차역의 공평함을 높여야 하는데 미심쩍게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발각만 안 되길 바라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다음 판어에 보면,

本廳은 작년 겨울, 隰州 5縣에 牒하고, 향사의 知委를 얻어 심사·결재하고, 각자에게 설명과 繳狀을 제출하게 해서 이미 명령을 따라 지켰고, 지금 差帳을 조사해 보니, 당당히 1戶를 만들어 제출했고, 교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⁴⁸⁾

라고 하여 知府가 각 현에 시달하여 법을 세워 제대로 役을 관리한 부분도 보

46) 周藤吉之, 앞의 책, 476쪽 참조

47) 『清明集』 卷3 賦役門, 「提舉再判下乞照限田免役狀, “如樂侍郎一戶, 卽名史者, 生於南唐, 仕於國初, 越今幾三百年, 猶以侍郎立戶, 以侍郎免役.”

48) 『清明集』 卷3 賦役門, 「以宗女夫蓋役, “本廳去冬遍牒五邑, 取鄉司知委, 分析收退, 各要分明, 繳狀回申, 已行違稟, 今索到差帳, 猶作一戶具呈, 可見姦猾.”

이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면역에 해당되지 않은 자의 농간을 밝혀 낼 수가 있었던 것이다. 위 편어와 같이 차역의 순서가 돌아갈 때마다 縣의 서리들은 免役해당자들이 증거문서를 제대로 갖추어 신고를 하는지만 철저히 본다면 官의 차역을 시행하는 데 누락됨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증거문서가 있어서 세워진 관호가 확실하고, 허용된 한전이 그 戶의 자산이 확실하다면 官에서는 증명서를 교부해야 하고, 官戶는 이것을 반드시 확보하고 있다가 차역이 돌아오면 제시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남송대에는 ‘縣’을 단위로 하지 않고, ‘都’를 단위로 하여 차역을 부과하였을까 하는 점이다. 그것은 북송대에는 縣을 단위로 하여 原額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균등히 세를 부과하였지만, 남송대에는 鄉을 단위로 兩稅의 원액을 할당하여 均稅를 하고, 동시에 토지대장도 만들었다. 이렇게 된 표면적 이유는 균세를 보다 더 정밀히 하기 위해서지만 사실은 조세의 포탈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즉 縣을 단위로 했을 때 여러 鄉에 자산이 널려 있을 경우 이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추적해 내기란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북송의 호적에 해당하는 ‘五等丁產簿’는 각각의 戶 아래에 그 戶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종합해 기록하고, 이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였다. 그래서 어느 한 戶가 여러 鄉에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당시의 행정능력으로 그것을 추적조사하거나 종합과세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고 또 이를 종합하여 戶等の 분급에 반영하는 것도 무리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를 악용한 조세포탈 뿐만 아니라 戶의 등급을 낮추려는 편법도 성행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송에서는 먼저 대상을 좁혀 鄉·都 단위로 토지대장을 작성하고, 兩稅도 戶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토지를 중심으로 부과하여 조세포탈의 폐해를 막고자 하였던 것이다.⁴⁹⁾

세금납부의 두 번째로 살펴 볼 부분은 남호(攬戶)와 서리와의 관계로 이는 官이 일반 서민의 役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남송 초기 소흥년간(1131~1162)부터 鄉都를 중심으로 代役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이 代役은 官도 공인

49) 김영제, 앞의 책, 435~436쪽 참조

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역법에 의한 역법운용은 형식적인 것으로 되었고, 또 각종 차역도 대리인이 전문화되고 있는 경향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⁵⁰⁾ 이와 더불어 남송에서는 조세 청부업자인 ‘납호’가 성행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들 납호들은 일반호의 夏稅를 견·면으로 모아서 정부에 바치는 자로서 揀子와 결탁하여 서민들을 수탈하고 있었다.

특히 남송에서는 하세나 추묘를 대부분 납호에 의해 모아서 바치고 있었다. 이후 조세의 攬納은 꽤 널리 행해지게 되고, 납호는 주·현성에 살면서 큰 중매인으로서 서리와 결탁하여 서민의 하세나 추묘를 모아서 납부할 때 조악한 세미로 바꾸어 바쳐 조세납입의 차액을 챙기고 있었다. 남송에서는 납납이 성행하고 있었으므로 서리와 납호와의 관계는 한층 더 긴밀한 관계로 발전하였을 것이다.

관호가 세를 수납할 때는 많은 幹人(관리인)에 의탁하고 일반 민호가 세를 납부할 때는 납호에 의탁하고 있어 남송 말에서 일반 농민의 兩稅는 납호에 의해서 대부분 납부되고 있었다. 하지만 다음 판어에서와 같이 부세를 면제하거나 감해 주는 詔勅이나 승이 내려져도 서민은 그 이익을 얻을 수 없었다.

본관은 주민이 무거운 세금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염려해, 작년 秋苗에서는 특히 斛面米를 감하고, 市利錢을 감해 주었는데, 이것은 경작에 종사하는 농민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또 납호가 어리석은 백성을 편취해 종래의 세율대로 많이 거둔 것을 걱정하고, 또 규약을 정해 관에 바치는 것을 취소해 이익이 3할을 넘지 않게 했다.⁵¹⁾

그것은 서민이 대부분 납기 기한보다 먼저 서리나 납호에게 稅를 바쳤기 때

50) 하지만 梅原郁은 이 람호의 출현을 북송중기 구법당이 집권할 당시인 원우원년(1086)이라고 한다. 즉 왕안석이 면역법을 다시 차역법으로 환원시키는 해에 납호가 처음 출현하였다고 하였다. 梅原郁, 『兩宋兩稅制度雜攷－中國王朝の徵稅體系－』, 中村二郎 編 『國家－理念と制度－』(1989); 김영제, 앞의 책, 437~438쪽 참조.

51) 『清明集』 卷3 賦役門, 「戒攬戶不得過取」, “當職軫念郡民因於賦歛之重, 故於去歲秋苗, 特與減斛面米, 罷市利錢, 蓋將以專服田力穡之農也. 又慮攬戶欺罔愚民, 仍前多取, 復與立定規約, 令除輸官之外, 所贏不得過三分.”

문이다. 그래서 면제의 조치가 나오더라도 서리나 남호가 세의 면제나 연납을 받을 뿐이었고, 서리나 남호는 납기 전에 민호의 양세를 거둬 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錢米가 면제될 뿐이었다. 또한 이것에 의해서도 양세가 대부분 남호에 의해서 거둬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남호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판어를 살펴보면,

장경영(張景榮)은 총영소(總領所)의 적본(糶本)을 담당하고, 子場을 열어 화적(和糶)을 청구받고 있다. 원래 이것은 부유한 백성과 남호(攬戶)의 職인데, 총영소에서는 원래 이런 무리들이 관을 사칭해 그 세력을 부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장경영은 남호의 신분이면서도 감히 官名을 사용해, 향인을 대상으로 마음대로 판결서를 작성하고 통형(筒型)의 족쇄를 사용해 취조하고 있어 그 해악을 입힌 자가 한 둘이 아니다. 그런데 영세(寧細乙)이라는 자는, 돈을 받고 쌀을 넣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족분이 결코 많지도 않았고, 또 장경영은 평소 영세(寧細乙)와 친분도 있었다. 그러나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일단 이런 강한 자리에 오르자, 영세(寧細乙)를 심하게 다루고, 자신이 무서운 사람임을 모른다고 해서 위세를 과시하고,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징수하라고 협박했던 것이다. (이에 참을 수 없던 영세(寧細乙)가 장경영의 집 앞에서 죽자,) 그 사건이 발각된 후에는 감히 연줄을 사용하는 등 무리한 행동을 해서, 覈檢官의 이순검(李巡檢)에게 부정을 바달라고 하고, 또 初檢官이 또 檢死하지 않는 단계에서는 사람의 사체를 숨기려 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檢分을 면해 죄를 벗어나려고 계획했다. 향인에 대한 처사가 이와 같이 혹독했고, 조정에 대한 태도도 이와 같이 고약했다.⁵²⁾

또 다른 판어에도 보면,

52) 『清明集』 卷12 懲惡門, 「詐官作威迫人於死」 “張景榮承領總所糶本, 置子場招糶. 此乃富民及攬戶之職, 總所初未嘗容其詐官作威也. 景榮乃敢以攬戶而行官稱, 輒行書判, 以筒鎖訊決而加於鄉人, 其被害者非一. 而寧細乙者, 領錢入米, 所欠不多, 張景榮平時本與之同閭巷, 相爾汝, 而年齒又在其下. 一旦乘此加無狀於寧細乙, 以示無恐, 其迫已甚矣. 發覺之後, 又敢把持計置, 使覈檢官李巡檢, 曲加藏匿於初檢官未檢時, 意欲無人臨屍, 使檢或不成, 可以白脫罪罟. 施於鄉人者既如此, 施於官府者又如此”

王東의 집은 溪洞蠻들의 근처에 있었는데, 이미 남호(攬戶)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또 隅總까지 되었다. 그것은 소위, 재빠른 토끼가 몇 개나 도망갈 길을 준비하고 있고, 맹렬한 호랑이가 날개를 가진 것과 같은 것이므로, 현의 관청으로서도 어떻게 일일이 그 불법적인 행위를 질책할 수 있겠는가. 왕동이 남호가 된 후부터는, 兩都의 稅賦가 조정으로 들어오지 않게 되고, 우충이 된 후부터는 兩都의 소송분쟁은 그가 마음대로 판결을 내리고 있다. 한 백성이면서 王租를 자기 것으로 하고 싶은 대로 권력을 휘두른다면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⁵³⁾

이상과 같이 장경영은 자신이 관명을 사칭한다든가, 향인을 상대로 판결문을 작성해 준다든가 하면서 관리라도 된 것처럼 행세하며 사람들에게 횡포를 부리고 있다. 그리고, 세를 징수하면서 협박까지 하였다. 이에 자살하는 사람까지 나오게 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순검에게 뇌물을 쓰기도 하였다. 또한 왕동처럼 서리나 남호가 향호로부터 세를 수취하면서도 정부에 세를 제대로 바치지 않았던 것은 남송의 초기부터였다. 따라서 남송에서는 남호가 稅租나 견을 납납하여 기한 내에 바치지 않는 것은 처벌되고 있지만 이를 바치지 않은 자가 많았던 것 같다. 왕동은 또한 남호이면서 성내의 치안까지 담당하였다. 그래서 왕동은 부세를 거두지만 관에 세를 제대로 납부하지도 않으면서 또한 성내에서 벌어지는 소송분쟁마다 끼어 들어 자신이 마음대로 판결을 내리기까지 하고 있다.

이와 같이 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의 富를 축적한 데서 올 수 있는 결과일 것이다. 이렇게 남호들이 초법적인 존재로 성장하자 士人들마저 남호가 되려고 하였다. 다음 판어에서 살펴보면,

조순경의 공술 내용을 보면, 제법 文理를 깨치고 있는 자이다. 만일 士人이라면 남호

53) 『清明集』 卷12 懲惡門, 「不納租賦擅作威福停藏逋逃脅持官司」, “王東家於溪洞之旁, 既爲攬戶, 又充隅總. 據狡兔之穴, 挾猛虎之翼, 縣道其能誰何之乎? 自其爲攬戶也, 則兩都之稅賦不復輸於公室矣, 自其充隅總也, 則兩都之獄訟遂專決於私家矣. 叢爾編氓, 而輒敢奄有王租, 擅作威福, 其罪已不可恕.”

에 충당시켜서는 안 된다. 이미 남호에 충당되었다면 縣吏와 마찬가지로. 그가 멋대로 관물의 상납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큰소리로 떠들어 현관에게 무례를 범하였으므로 (후략)…⁵⁴⁾

조순경이라는 자는 원래 士人이기 때문에 남호로 지정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남호의 폐해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원래 일반서민들의 직역에 속해 있던 남호를 일부 사인들이 점유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일부 사대부들의 생활보다 남호의 생활이 더 나았다는 증거이며, 이렇게 신분 역이동 현상이 일어날 만큼 서리와 남호의 유착관계에서 생겨난 이익이 상당했다는 방증이 되기 때문이다. 이전 차역법시기에는 官戶라고 속이면서까지 면역을 청할 만큼 이러한 직역은 힘든 것이었지만 남호의 대납이 성행하던 남송시기의 남호의 생활은 운택하였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남송에서 서리는 남호와 결탁하여 서민으로부터 부당하게 조세를 징수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서리의 수탈은 이미 북송 후반기부터 나타나고 있었는데 남송이 되어서는 더욱 심해지게 되었으며 이 서리 제도의 개혁을 논함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렇다면, 폐단이 많은 攬戶제도를 국가는 왜 방치해 두었던 것일까. 그것은 행정의 효율이나 편의를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서리와 남호를 행정의 최말단에 거점으로 두고, 송왕조는 국가와 민호와의 교량적인 역할을 수행시키고 있었다. 이는 국가 측에서 보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행정실무를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이고, 단기간으로 교체하는 縣의 관료와는 달리 현지에 근거를 두고 있는 서리와 남호에게 국가조세 부담의 일정한 공급원 역할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서리와 남호의 존재는 국가로 보면 소위 ‘필요악’이었던 것이다.

다음은 조세의 최종에 관한 내용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우선 조세 납부의 독촉에는 그 절차와 담당하는 사람이 지정되어 있었다.⁵⁵⁾ 이것을 보여주는 판

54) 『清明集』 卷11 人品門, 「士人充攬戶」 “觀操舜卿所供, 亦粗有文采, 但既是士人, 便不應充攬戶. 既充攬戶, 則與縣吏等耳. 既恃頑拖欠官物, 又咆哮無禮縣官, (後略)….”

어가 있는데,

保正·戶長이 번갈아 가며 그들에게 세금을 독촉했지만 징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형장을 줄지, 어느 정도의 과징금을 징수할 지 모르겠다. …(중략)… 각 향마다 缺戶의 명단을 작성하고, 趙桂 등을 순서대로 구류해서 승인하면 촌에 돌아가서 戶마다 독촉하고, 10일마다 세 번의 기한을 정한다. 그들은 각각 몸을 바로 해서 모두 廩에 寄收하고, 催稅의 기한이 다 되는 날을 기다려 기한 일에는 마땅히 本戶의 세를 납입하게 한다. 만일 위반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戶長 에게 비취 訊決하라.⁵⁶⁾

이상과 같이 우선 향촌의 조직상 保正이나 戶長들이⁵⁷⁾ 鄉마다 결호 명단을 작성하고, 戶마다 독촉하는데 세 번의 기한을 주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징계처분을 내리는 것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납송에 이르러 세금을 내지 못하는 결호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지주·지현들은 현의 서리들을 시켜 이 결호를 최촉하여 세를 징수하였다. 유력한 호는 현의 서리에게 뇌물을 주고 세를 면하였는데 빈곤한 호는 출고 배고픔에 쫓겨 뇌물을 주는 것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최촉의 방법 중에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바로 무력으로 옥박질러 세를 바치게 하는 방법일 것이다. 각 현의 지현들은 현위를 시켜 병졸들을 향촌에 보내어 세금을 최촉하면서 사람들을 잡아오게 하는 것이었다. 이 병졸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바로 弓手이다. 우선 이런 현위나 순검들의 궁수나 채병을 이

55) 宋代의 縣 아래 향촌은 국가의 조세와 요역의 징수를 위해 행정적으로 편성되었다. 처음에는 縣 아래의 “鄉”을 단위로 里正을 두어 조세의 징수와 기타 전반적인 향촌행정을 담당케 했고, 그 아래 조세징수 등의 문서작성이나 장부정리와 같은 것을 담당하던 鄉書手를 배속시키고 있었다. 이후 仁宗 至和 2년(1055년)에 조세의 징수는 戶長이 맡아보고, 기타 치안관계를 포함한 향촌전반의 행정은 耆長이 담당하면서 里正은 폐지되었다.

56) 『清明集』 卷3 賦役門, 「頑戶抵負稅賦」 “但保正, 戶長前後爲催爾等稅錢不到, 不知是受了幾多荊杖, 陪了幾多錢財, …(중략)… 案具各鄉欠戶姓名, 錮身趙桂等以次人, 承引下鄉, 逐戶催追, 立爲三限, 每限十日. 其各人正身並寄收廩房, 候催足日方與收納本戶稅, 如違不到, 照戶長例訊決.”

57) 김중박, 「중국 향촌조직의 변천과정과 행정구획화」, 『중국사연구』 7집(1999), 133쪽 참조.

용한 세금 최축이 불법이었음을 보여주는 판어가 있다.

전국적으로 催科는 都保·耆長에게 시키는 것인데, 모름지기 吏卒을 향촌에 보낼 수 있단 말인가. 만일 都保·耆長 중에서 差使에 임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주·현에서 직접 처단하고, 목에 칼을 씌우고 都에 통지한다면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있을까.⁵⁸⁾

또 다른 판어에는

신주에서 온 사람은 모두, 거기에서는 순검이 세금을 독촉하고 있다고 말하므로, 張天驥의 보고서[狀]에 의해 겨우 알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원래 순검이 세금을 독촉할 수 없는데 서리와 貼司가 寨를 사용해 세금을 독촉한다는 법은 있을 수 있을까? 간사한 관리와 사나운卒은 똑같이 사방에 해독을 퍼트린다.⁵⁹⁾

이상과 같이 보정이나 호장이 세금독촉을 해야 하는 정식의 절차를 무시하고 서리나 첩사들이 寨에 연락해 순검에게 채명을 이용하여 향촌의 세금을 독촉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절차를 무시한 세금 독촉이 성행하고 있었던 것일까? 다음의 판어를 보면,

본관이 신주의 경계에 들어서자, 늘어선 寨兵들은 「縣에서 의복과 식량을 부족하게 지급한다」고 하고, 都保역인은 「縣이 預借를 무리하게 남부시키고 있다」고 한다. 역인들의 말에 의하면 5년의 預借로 아직 모내기하는 여름인데도 秋苗를 해마다 거두었고, 또 6년의 세금까지 징수하고 있다고 한다. 수탈이 이렇다는데, 참고 들을 수가 없다. 知縣이라는 것은 어떤 자는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에 합격하고, 어떤 자는 명문에서 나오고 있는데 도를 배우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완전히 없을 수 있겠는가. 사실은 州의 期會와

58) 『清明集』 卷3 賦役門, 「州縣催科不許專人」, “通天下使都保耆長催科, 豈有須用吏卒下鄉之理! 若有耆保不服差使, 州縣自合追斷, 枷項, 傳都號令, 孰敢不畏?”

59) 『清明集』 卷3 賦役門, 「巡檢催稅無此法」, “自信州來者, 皆言巡檢在彼催稅, 何待張天驥狀然後知之. 巡檢催稅固不可, 吏貼就寨催稅, 有此法乎? 姦吏與悍卒並同, 其流毒四出也.”

軍糧에 쫓기고 있기 때문이다. 들은 바에 의하면 預借는 최근에 시작되었다고 한다. …(중략)… 預借는 稅目の 戶眼을 열어 보지 않고, 그저 서리와 첩사가 數目を 가능한 것에 의거한다. 都保를 抑勒해서 그 수치대로 催科하니 세금이 官의 창고에 들어갈지 서리의 손에 떨어질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이래서야 백성과 都保가 어찌 힘이 안 들 수가 있겠는가.⁶⁰⁾

그것은 州의 서리들이 연간회계나 군량의 조달에 쫓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초여름 모내기철에 秋苗를 거둔다든지 심지어 5년 후의 조세를 미리 납부시키는 예차를 실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미리 정해놓은 조세의 數目を 채우기 위해 鄉都의 보정과 호장을 독촉해 보았으나 제대로 수납되지 않자, 서리와 첩사는 채병을 동원하여 세금을 독촉하고, 체납자를 체포해 가는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해 힘들게 거둬들인 조세도 官의 창고로 제대로 入庫되지 않고 서리들이 횡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서리들의 횡령과 불법적인 세금독촉이라는 악순환은 끊임없이 서민들의 생활을 더욱 궁핍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또 다른 판어에는,

순검이 채병을 데리고 향으로 내려가 납세 독촉하는 것은 어느 법에 기초한 것일까. 保正이 호장을 부려 조세 징수를 완수하지 못하자 순검이 직접 보정에게 장형 100대를 집행하고, 다시 순검사에 구류시켜 버렸다. 이 또한 어디에 근거한 규정이란 말인가. 만일 이후에도 누우치지 않는다면 처벌은 吏를 配하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겠다.⁶¹⁾

원래 弓手는 자체적으로 무장능력을 갖추고 있었으며, 현금 관리인 현위와

60) 『清明集』 卷3 賦役門, 「州縣不當勒納預借稅色」, “當職入信州界, 鋪寨兵則論縣道欠其衣糧, 都保役人又論縣道勒納預借, 謂如五年田方夏秋米已交足, 又借及六年之米. 剝下如此, 所不忍聞. 知縣或奮由科第, 或出於名門, 豈其畧無學道愛人之心哉? 諒亦迫於州郡期會, 軍兵糧食之枯. 訪聞預借始於近年, …(중략)… 如預借稅色, 既不開具戶眼, 止據吏帖數秤數目, 抑勒都保, 必欲如數催到, 錢物或歸官庫, 或歸吏手, 亦何所稽考.”

61) 『清明集』 卷1 官吏門, 「禁戢巡檢帶寨兵下鄉催科等事」, “巡檢帶寨兵下鄉催科, 出何條法. 保正追戶長不到, 親身杖一百, 又且押下巡司, 是何政事. 如更不自警, 則其罪何止於配吏而已.”

순검의 지휘 하에 반역의 무리를 진압하고 치안을 유지하며, 하층사회를 안정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일반적인 상황 하에서 궁수는 서민이 부담하는 직역 중의 하나로서 제2등호가 담당하였다. 그들은 군인과 경찰의 신분을 겸하고 있었으므로, 지휘체계에 있어서 지방 행정관 중 하나인 縣尉에 예속되어 이러한 예속관계 때문에 弓手는 반드시 지방장관의 지휘를 따라야 했으며, 세금을 최촉하고 조세를 감독해야 하는 직무 이외의 임무도 부담해야 했다.⁶²⁾

이렇게 적어도 南宋 말기에 弓手는 하층사회의 사람들에게 주는 인상은 상당히 부정적이었다. 또한 弓手를 파견하여 직권 이외의 일을 맡게 하는 것도 분명히 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세금을 재촉하는 것이 비록 州·縣의 시급한 업무이지만 결코 법 밖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이 밖에도 궁수는 서민의 재물을 수탈하면서 폐를 끼치고 있었다. 다음 판어에 보면,

순검이나 현위가 향에 내려갈 때, 데리고 온 吏卒은 아마도 수십 명이었는데, 매일 들어가는 식량이 어디에서 조달하는가 하면, 백성에게서 탈취하는 것이다. 그들이 지나간 곳에서는 닭과 개도 전부 없어진다. 이것은 도적과 다를 바 없다. 하물며 닭과 개 아닌 것들이야 어찌했겠는가. 이것은 농번기였을 때이고, 무엇보다 순검과 현위가 향에 내려가서는 안 되는 시기였다.⁶³⁾

궁수들은 향촌으로 내려가서 세금을 기피한 자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주민들의 닭과 개를 잡아먹는 등 강도보다 더 심한 행동으로 서민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생활할 수 없도록 하여 향촌에서의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었다.

그러므로 다음 판어에서 볼 수 있듯이, 서민들로부터 弓手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야기 시킨 것은 사실상 그들의 행위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

62) 黃寬重, 앞의 논문, 238~239쪽 참조.

63) 『清明集』 卷1 官吏門, 「責罰巡尉下鄉」 “巡, 尉下鄉, 一行吏卒動是三, 五十人, 逐日食用何所從來, 不過取之於百姓而已. 所過之處, 雞犬皆空, 無異盜賊, 況有出於雞犬之外者乎? 當此農務正急之時, 尤非巡, 尉下鄉之日.”

弓手와 土軍(토군)이 백성의 집에 이르기만 하면 마치 호랑이가 숲에서 나오고, 수달이 물을 만난 듯이 하여 결코 빈손으로 지나가는 법이 없으니, 그 피해됨은 철저히 진상을 파헤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중략)… 주순검은 근래에 악행이 점점 더 노골화되어, 세금 독촉 건으로 백성의 소송을 야기했다. 나는 이미 의구심이 가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 지금 이 소송의 발단을 보면, 단순한 향촌의 사소한 말싸움에 불과하다. 이런 소송은 주현에는 매일 발생하고 있고, 그 중요함은 도적과 살상사건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사소한 일이다. 그런데도 사람을 파견하고, 곧장 순검이 몸소 행차해서 당사자의 형제를 몸소 체포하고 근처의 사람들이 놀라 흩어지게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⁶⁴⁾

그 후에 지방이 변영하면서 조세가 가중됨에 따라 서민들이 조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상황이 심각해졌고, 地稅의 납입 독촉 등의 사무 역시 그에 따라 증가하였다. 그래서 지방관은 가능한 한 빨리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역시 무장능력을 갖춘 弓手들에 의지하게 되었고, 弓手는 본래 가진 임무 이외의 일이 끊임없이 증가하였던 것이다. 마침내 弓手는 점차 재물을 취하는데 이용되거나 스스로 거기에 빠져드는 상황이 되어 향촌에 폐를 끼치고, 서민들로부터 원성을 사서 그들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으로 변하였던 것이다.⁶⁵⁾

이상과 같이 세금부과와 징수상 부정행위들을 정리해 보면 우선 차역법이 시행됨에 있어 役의 공정한 분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대부분 官戶로 토지대장에 등재를 하여 役의 부과를 회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役의 회피현상이 서리제도를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役의 불공정한 분급에는 반드시 서리들의 부정행위가 결부되어 있었다고 본다. 불공정한 役의 분급상황이 계속되자 송조정에서는 모역법으로 役의 부담을 전환시켰는데 이때 등장한 것이 남호이다. 많은 인구가동

64) 『清明集』 卷1 官吏門, 「細故不應牒官差人承牒官不應便自親出」 “弓手, 土軍一到百姓之家, 如虎之出林, 獺之入水, 決無空過之理, 其爲搔擾, 不待根究而後知, …(中略)… 周巡檢日來妄作漸著, 因催科事引惹民詞, 當職已不能無投杼之疑. 今觀此訟之興, 特田野小唇舌細故, 此等訟州縣無日無之, 卽非盜賊殺傷公事之比, 而乃至差人, 便至親出, 便至親執其兄弟, 便至驚散其鄰里.”

65) 黃寬重, 앞의 논문, 244~247쪽 참조.

과 기후변화로 조세확보가 어려운 시점에서 官으로서는 조세의 일정한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납납의 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유지시켜 나갔다.

조세징수의 편의성을 위해 또 한가지 동원된 방법이 궁수·체병들을 이용한 조세독촉과 체납자들의 불법체포 행위였다. 원래 궁수는 도적(단)을 체포하고 치안유지를 목적으로 편성된 직역으로 일반서민의 조세최촉과는 무관한 것이었으나 지방관들의 명령에 동원되어 일반서민들로부터 원성을 받는 존재로 바뀌게 되었다. 그러므로 세징업무에서 서리들의 부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서리 제도가 유지된 것은 폐해가 극심해지는 여러 제도가 발생·유지되어도 행정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추구한다는 명목상의 이유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IV. 맺음말

이상으로 『清明集』에 나타난 宋代 지방서리의 뇌물수수와 같은 부정행위를 검토해 봄으로써 獄訟과 조세의 부과·징수상의 胥吏들의 여러 가지 모습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서술한 바를 정리함으로써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송대에는 州·縣에 걸쳐 많은 종류의 서리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들은 五代부터 행정실무 각 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여 송대에 접어들면서 직역제도의 분급과정에서 점차 세습화되어 가는 가운데 서리체도로 굳어져 가게 된 것이다. 이들은 송대 지방관료를 보좌하면서 행정·조세·옥송업무 전반에서 官과 일반 서민들과의 중간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이들 지방서리들은 현직 사대부 관료들이 행정실무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옥송의 과정과 조세의 부과·징수과정에서 많은 부정행위 즉 뇌물수수나 횡령 등을 저지르면서 국가의 재정을 어지럽히고 일반서민들을 수탈하는 상황을 발생시킨 것이다.

우선, 獄訟에서는 재판업무를 접수부터, 감옥에 수감, 장형의 집행, 석방에

이르기까지 전과징에서 뇌물을 갈취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서리들은 그들 자신이 개별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지방관들의 묵인아래 행해지고 있어 지방관들의 앞잡이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들은 지방의 유력자들인 豪民들과도 유착관계를 맺어 유력자들의 불법행위를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소송꾼들과도 연계하여 일반서민들을 수탈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음은 세금부과와 징수상의 부정행위들이 일어나는 이유로써 우선 차역법이 시행됨에 있어 공정한 분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것은 대부분 官戶로 토지대장에 등재를 하여 役의 부과를 회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의 회피현상이 서리제도를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役의 불공정한 분급에는 반드시 서리들의 부정행위가 결부되어 있었다고 본다. 불공정한 역의 분급상황이 계속되자 조정에서는 모역법으로 역의 부담을 전환시켰는데 이때 등장한 것이 남호이다. 남호는 조세를 대납하는 사람으로 관으로서의 조세의 일정한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남납의 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명목하에 이 제도를 유지시켜 나갔던 것이다. 이러한 조세징수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위해 또 한가지 동원된 것이 궁수·채병들을 이용한 조세독촉과 체납자들의 불법체포행위였다. 원래 궁수는 도적(단)을 체포하고 치안유지를 목적으로 편성된 직역으로 일반서민의 조세최측과는 무관한 것이었으나 지방관들의 명령에 동원되어 일반서민들로부터 원성을 받는 존재로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송왕조는 넘쳐나는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데 서리를 이용해 서민사회의 발전을 모색하였다. 하지만 서리를 통해 국가의 위신과 황제의 통치체제를 지방의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작용시키려 했던 송왕조의 목표는 지방행정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르며 사복을 채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던 서리들에 의해 조금씩 붕괴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다.

■ 참고문헌

1. 사료

- 『名公書判 清明集』, 中華書局 版.
『慶元條法事類』, 海王邨古籍叢刊, 中國書店 版, 1990.

2. 저서

- 고석림 著, 『宋代社會經濟史研究』, 형설출판사, 1991.
郭東旭 著, 『宋代法制研究』, 河北大學出版社, 2000.
_____, 『宋代法律史論』, 河北大學出版部, 2001.
김영제 著, 『唐宋財政史』, 신서원, 1995.
大澤正昭 著, 『主張する<愚民>たち』, 角川書店, 1996.
島居一康 著, 『宋代稅政史研究』, 汲古書院, 1993.
島田正郎 著, 任大熙의 3인 옮김, 『아시아법사』, 서경문화사, 2000.
梅原郁 著, 『宋代官僚制度研究』, 同朋舍, 1985.
배숙희 著, 『宋代科擧制度와 官僚社會』, 삼지원, 2001.
서울대학교동양사학연구실 編, 『講座中國史』 III, 지식산업사, 1992.
西田太一郎 著, 천진호·임대희·전영섭 옮김, 『中國刑法史研究』, 1998.
宋代官箴研究會 編, 『宋代社會與法律』, 東大圖書股份有限公司, 2001.
신채식 著, 『宋代官僚制研究』, 삼영사, 1981.
양종국 著, 『宋代士大夫社會研究』, 삼지원, 1996.
위당신채식교수정년기념논총간행위원회 편, 『宋代史研究論叢』, 삼지원, 2000.
仁井田陞 著, 『中國法制史研究—刑法編』, 東京大學出版會, 1959.
_____, 『中國法制史研究—法과 慣習, 法과 道德』, 東京大學出版會, 1964
임대희·김택민 主編, 『譯註 唐律疏議』 各則(上·下), 한국법제연구원, 1998.
제임스 류 著, 이범학 옮김, 『왕안석과 개혁정책』, 지식산업사, 1991.
周藤吉之 著, 『宋代經濟史研究』, 東京大學出版會, 1962.
周藤吉之·中嶋 敏 共著, 『中國의 歷史』 5 五代·宋, 講談社, 1974.

曾我部靜雄 著, 『宋代財政史』, 大安社, 1966.

_____, 『中國律令史研究』, 吉川弘文館, 1971.

J.W.Chaffee 著, 양중국 옮김, 『宋代 中國人の 科擧生活』, 신서원, 2001.

3. 논문

高橋芳郎, 「名公書判清明集」, 『宋代中國の法制と社會』, 汲古書院, 2002.

고석림, 「宋代的 지배계급」, 『慶北史學』 4집, 1982.

宮崎市定, 「王安石の吏士合一策」, 『アジア史研究』 권1, 1957.

_____, 「胥吏の陪備を中心として」, 『アジア史研究』 권3, 1957.

_____, 「宋元時代の法制と裁判機構」, 『アジア史研究』 권4, 1957.

_____, 「宋代州縣制度の由來とその特色」, 『アジア史研究』 권4, 1957.

김영제, 「宋代 兩稅의 부과체계에 대하여」, 『송요금원사연구』 창간호, 1997.

_____, 「宋代地方 州縣에 있어서 兩稅의 감면행정에 대하여」, 『宋遼金元史研究』 2집, 1998.

_____, 「南宋의 지방재정에 대하여」, 『中國史研究』 21집, 2002.

김종박, 「중국 향촌조직의 변천과정과 행정구획화」, 『中國史研究』 7집, 1999.

박영철, 「譯註 宋史 刑法志」, 『中國史研究』 19집, 2002.

신태광, 「南宋前期의 胥吏」, 『동국사학』 27집, 1993.

_____, 「北宋末期의 胥吏의 역량강화」, 『소헌남도영박사고회기념사학논총』, 민
족문화사, 1993.

_____, 「南宋後期の 胥吏」, 『지촌김갑주교수화갑기념사학논총』, 1994.

_____, 「宋代胥吏研究」, 동국대학교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6.

안준광, 「王安石 보갑법의 사회적기능」, 『慶北史學』 4집, 1982.

劉馨珺, 「宋代的請託風氣—以「請求」罪爲中心之探討」, 『宋代社會與法律』, 宋代
官箴研究會 編, 2001.

이근명, 「五代宋初 胥吏 존재형태의 변화와 그 성격」, 『東洋史學研究』 40집, 1992.

이 현, 「金代 提刑司에 대하여」, 『경대사론』 3집, 1987.

장남식, 「北宋初期의 御史의 分路按獄」, 『忠南史學』 3집, 1988.

- 赤城隆治, 「近世地方政治の諸相」, 『宋元時代の基本問題』, 汲古書院, 1996.
- 周藤吉之, 「宋代州縣の職役と胥吏の發展」, 『宋代經濟史研究』, 東京大學出版會, 1962.
- 曾我部靜雄, 「宋代の役法」, 『宋代財政史』, 大安社, 1966.
- 川村 康, 「宋代折杖法初考」, 『早稻田法學』 65권 4호, 早稻田大學法學會, 1990.
- _____, 「宋代杖殺考」, 『東洋文化研究所紀要』 제120책, 1993.
- _____, 「宋代斷例考」, 『東洋文化研究所紀要』 제126책, 1995.
- 黃寬重, 「宋代基層社會的武裝警備—弓手」, 『宋代社會與法律』, 宋代官箴研究會編, 2001.

A Study on Local *Xuli*(胥吏) During the Sung Dynasty as Appearing in 『Ming-kung shu-p'an ch'ing-ming chi』*

Park, Soon-Gon**

The aim of this study is targeting local *Xuli*(胥吏) appearing in 『Ming-kung-shu-p'an-ching-ming chi』 compiled during the late Southern Sung Dynasty in the 13th century, this research paper sought to analyze their wrongdoings related to both legal proceedings and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taxes, thus studying their various cases.

During the Sung Dynasty, across states and prefectures, many kinds of *Xuli*(胥吏) worked, and they started to distinguish themselves in various sections of administrative affairs from the Five Chinese dynasties. Afterwards, as China entered the Sung Dynasty, the office of *Xuli*(胥吏) was gradually inherit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in the process of the division of *Zhiyi*(職役) system, the system of *Xuli*(胥吏) was in place. *Xuli*(胥吏) supported local officials during the era of Sung Dynasty, and played the role of middlemen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Common people, in handling administrative, tax and lawsuit affairs. However, taking advantage of the lack of working-level ability of incumbent *Shidafu*(士大夫) officials, local *Xuli*(胥吏) committed a slew of wrongdoings in the process of legal proceedings, and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taxes, by accepting bribes and embezzling wealth, thus disrupting the nation's finances and depriving common people of properties.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uncil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January, 2004.

**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Supervised by Professor Im, Dae-Heui)

First, in process of legal proceedings, *Xuli*(胥吏) took bribes in the whole process of accepting trial cases, imprisonment, execution of flogging, and setting free. And, *Xuli*(胥吏) committed wrongdoings by themselves, but, mostly, under the acquiescence of heads of local governments. Also, they had connection with lawsuit brokers, and deprived ordinary people of wealth.

Likewise, wrongdoings occurred in the process of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taxes, since with the enforcement of the commandeering law, fair allotment of state work was not implemented, thus causing the imposition of work to be avoided. This unfair allotment of state work continued; thus the government allotted state work among ordinary people by introducing *Muyi*(募役) law. With the system introduced, appeared *Lanhu*(攬戶). Lanhu were people who paid taxes on behalf of ordinary people, and the governments operated this system in order to secure certain amounts of taxes, under the name of pursuing efficiency in administrative affairs, although there were many absurdities with the tax payment system. The governments also mobilized *Gongsbou*(弓手) and *Zhaibing*(寨兵) to ensure the efficiency and convenience in collecting taxes, to urge the payment of taxes an arrest tax delinquents. *Gongsbou*(弓手) were originally supposed to be soldiers for maintaining security, and they had nothing to do with the job of urging ordinary people to pay taxes. However, they were mobilized on the instruction of heads of local governments to do the job; thus they stirred complaints from ordinary people.

Thus, this study sought to be instrumental in understanding the relation between local *Xuli*(胥吏), and common people, as appearing in the judicial precedents collection, 『Ming-kung-shu-p'an-ching-ming chi』, compiled during the Sung Dynasty, as well as the lives of ordinary people during the Southern Sung Period.

[Key Words] Sung Dynasty, *Xuli*(胥吏), 『Ming-kung-shu-p'an-ching-ming chi』, In process of legal proceedings, Collection of taxes